

비교법제 연구 09-15-□□-3

**주요 국가의 에너지 개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호 주 -

김 범 준

**주요 국가의 에너지 개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호주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Energy Development in Major Countries
: Australia**

연구자 : 김범준(초청연구원)
Kim, Beom-Joon

2009. 11. 30.

국문 요약

정부는 세계 석유, 석탄 가격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강구하는 한편 이 분야에 대한 규제 및 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원공급처를 다변화하고 해외자원 개발수입을 적극 도모하는 한편 해당 국가에 대한 에너지법제 및 자원규제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원의 해외자원의 존도가 높은 국가들이나 자원이 풍부하면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에너지관련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에너지법제를 둘러싼 제반의 사정을 살펴본다면, 우리나라와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법제의 비교법적 연구 또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호주의 에너지법제를 대상으로 (1)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체계, (2) 에너지 공급설비 관련 관리 및 감독 체계, (3) 에너지산업의 투자진출에 대한 법제 환경 등을 검토하여 국내 법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호주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제조업의 기반이 취약하고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으며 자본의 외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지만,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자원 수출국으로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경제적·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로서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대상국이라고 인정받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자원민족주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는 자국 에너지·광물자원 개발에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호주정부는 민간기업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해외 수출시장 확대를 위하여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ASEAN, 미국 등 아·태 지역 국가등과의 FTA를 적극 추진 중이며 한국 등 9개의 에너지자원 수요국과 정기적인 양자 간 자원 협력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호주의 투자법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을 투자하여 해외자원개발에 진출하려는 국가에 있어서는 우호적인 법제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국가와 달리 외국자본에 대한 우호적인 경향을 가지는 호주에 있어서는,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대열에 우선적으로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 키워드 : 호주, 에너지법제·규제, 에너지 자원, 석유, 광물, 석탄, 투자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tries to secure stable energy sources and invigorate industries and regulations in this field in order to properly respond to the recent financial crisis due to ever-changing oil and coal prices in global markets. Thus, in order to secure stable supply of energy sources, it is needed to diversify a source of energy supply and understand target countries' legal systems and regulations in energy development and managem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udy on energy-related legal systems of some countries that deeply depend on foreign resources or have a plenty of energy sources and, at the same time, a efficient management system for them. Particularly, this circumstances require us to study on energy-related legal systems of some countries with which we can have close relationship for energy industries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This study focuses on the energy-related legal system of Australia and examines (1) the general regulatory framework of energy industries, (2) the management and oversight system of facilities for energy supply, and (3) the legal and regulatory environment for investment in energy-related industries in order to deduce implications for Korean legal systems for energy development, management, and investment. Although, Australia relatively has weak foundation for manufacturing industry and depends on service industry, it has a plenty of natural resources and is evaluated as one of resource-exporting countries. Especially, it is recognized as one of the safest countries for investment in the field of energy sources with a stable economic and political environment.

As a conclusion, Australia has friendly legal system for foreign countries that wants overseas expansion to invest and explore Australia's natural and energy resources because it encourages foreign countries to actively participate and invest in its energy sources in spite of the global nationalism over resources.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hat Korea try to invest and participate in development plan of Australia's energy resources as soon as possible.

※ Key Words : **Australia, Energy-related legal system • regulation, Energy Resources, Oil, Coal, Mineral, Investment**

목 차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1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1
제 2 절 연구의 범위	14
제 2 장 호주의 국가현황 및 에너지 정책과 법제 현황	17
제 1 절 호주의 국가 및 경제 현황	17
I. 호주의 국가 현황	17
II. 호주의 경제 현황	19
III. 산업별 프로젝트 산업 현황	24
제 2 절 한국-호주 간 투자 및 수출입 현황	25
I. 한국-호주간 수출입 동향	25
II. 품목별 한국-호주 수출입 동향	25
제 3 절 호주의 에너지 정책 및 법제 현황	27
I. 호주 에너지 광물산업의 역사	27
II. 호주의 에너지 정책 현황	30
III. 호주의 에너지산업 및 자원 현황	35
IV. 호주의 에너지 개발 관련 기관	46
V. 녹색에너지 산업 현황	49

VI. 호주의 투자유치 및 투자산업 현황	60
제 3 장 호주의 에너지개발법제의 규제체계 및 내용	73
제 1 절 에너지자원 개발에 관한 일반적 개요	73
I. 에너지광물 산업의 인프라	73
II. 에너지개발 법제와 관련된 산업계의 구성	74
제 2 절 호주의 에너지 법제 현황	77
I. 에너지 법제 운영 등에 관련된 기관	77
II. 법령에 의한 자원부문 규제 현황	79
제 3 절 에너지 자원개발 규제에 관한 기본 법제	85
I. 호주에 있어서의 광업법	85
II. 광업권의 내용	86
III. 광업 활동 허가를 위한 절차	90
IV. 최저 지출 조건	92
V. 환경 보호	93
VI. 선주민의 토지에 관한 권리	97
VII. 호주 특유의 선주권 제도	101
제 4 절 에너지 개발 부문별 규제 체계	106
I. 석유개발에 관한 규제체계	106
II. 광물개발에 관한 규제체계 탐사	110
III. 석탄개발에 관한 규제체계	112
제 4 장 호주의 에너지개발 관련 투자법제의 내용	117
제 1 절 호주에 대한 투자진출 형태	117
I. 투자 진출 형태	117

II. 진출 형태별 절차	118
III. 호주의 자원부문 투자환경 현황	121
제 2 절 에너지 광물자원 산업에 대한 투자규제 내용	124
I. 에너지 자원 산업에 대한 투자규제의 기본 원칙	124
II.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의 종류	126
III. 투자회사의 유형 및 규제	127
제 3 절 외국인 투자에 대한 최근의 변화	129
I. 개 요	129
II. 주요 내용	130
III. 검 토	131
제 5 장 결 론	135
참 고 문 헌	13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정부는 세계 석유, 석탄 가격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강구하는 한편 이 분야에 대한 규제 및 산업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원공급처를 다변화하고 해외자원 개발수입을 적극 도모하는 한편 해당 국가에 대한 에너지법제 및 자원규제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자원의 해외자원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나 자원이 풍부하면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에너지관련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에너지 산업의 경우는 지역별로 국가 상호간에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산업으로 발전하는 형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자국의 에너지 산업 발전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와의 협정 또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야 하고, 이러한 국가간 시스템 구축은 자국의 에너지 산업 발전에 시너지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법제를 둘러싼 제반의 사정을 살펴 본다면, 우리나라와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법제의 비교법적 연구 또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요 국가의 에너지정책의 특징은 다음의 표와 같이 구별됨. 이러한 정책의 특징은 에너지법제의 체계와 내용에 따라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미 국 형	유 럽 형
대상국가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정책접근	현 에너지 문제점 해결 (Positive Approach)	미래 목표 설정, 경로 역추적 (Normative Approach)
정책중점	에너지 공급 증대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주체	정부 적극 주도	민간 정부 함께 참여

위의 도표내용을 살펴보면, 유럽에서의 에너지정책과 미국 및 기타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차이점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시행될 수 있는 기본적인 에너지 정책 전반을 시사하며, 정부의 규제와 민간의 참여를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규제의 최적화된 균형점을 제공하고,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이슈화되는 에너지정책 시행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및 법제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배경으로 에너지법제에 있어서 (1)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체계, (2) 에너지 공급설비 관련 관리 및 감독 체계, (3) 에너지산업의 투자진출에 대한 법제 환경 등과 같은 사안이 중요한 이슈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상기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위에서 언급한 항목 등에 대한 에너지 법제의 현황 및 국내법적 시사점에 관한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본 보고서의 주요 연구대상국가인 호주는 상기한 바와 같은 국제적인 에너지법제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국가라고 할 것이다. 즉, 위의 도표상에서 언급한 국가는 아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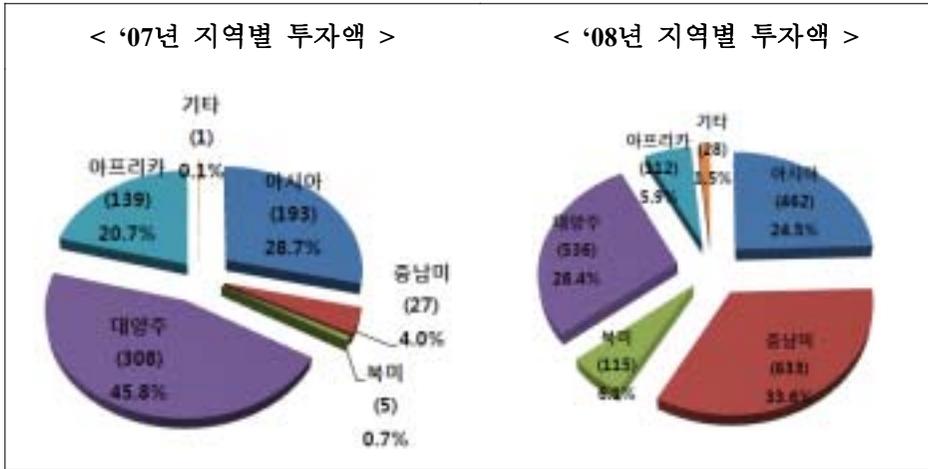
우리나라와의 자원외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상과 의미를 가지는 국가라고 할 것이다.

즉, 호주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제조업의 기반이 취약하고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으며 자본의 외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지만,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자원 수출국으로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경제적·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로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대상국이라고 인정받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자원민족주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는 자국 에너지·광물자원 개발에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최근 호주는 2003년과 2007년에 동티모르와 에너지자원 공동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해외 에너지자원에 관한 투자협정의 일례로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해외에너지자원 투자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호주정부는 민간기업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해외 수출시장 확대를 위하여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ASEAN, 미국 등 아·태 지역 국가등과의 FTA를 적극 추진 중이며 한국 등 9개의 에너지자원 수요국과 정기적인 양자간 자원 협력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도에 비하여 2008년도 호주에 대한 투자비율이 중남미에 대한 투자비율의 상승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에너지자원에 대한 주요한 투자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호주의 에너지개발법제에 관한 연구는 에너지산업에 대한 정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효율성과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체계에 관하여 선진적인 규제기법 및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준 마련으로 국제간 산업교류 및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지식을 제공하며, 에너지산업에 대한 해외진출 추진시 관련 산업 해당정보 및 투자 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부·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산업 활성화 및 규제시스템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연구의 범위 및 내용을 구성한다.

- (1) 호주의 에너지개발 현황 및 자원법제 현황
 - 우리나라와 호주와의 에너지 자원 수출입 현황
 - 관련 에너지개발법제의 현황
 - 부문별 자원 현황 및 자원개발 현황

(2) 호주의 에너지개발법제의 규제체계 및 내용

- 호주의 에너지 정책 현황과 에너지산업 및 자원 현황
-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규제 체계
- 에너지 자원의 개발에 관한 법률관계와 에너지 개발 관련 기관
- 호주 특유의 에너지 개발 관련 법제의 내용
- 국제시장에서의 산업교류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의 구체적 내용과 개발법제에 관한 규제내용

(2) 호주의 에너지개발 관련 투자법제의 내용

- 호주의 투자유치 및 투자산업 현황
- 호주의 에너지 자원 산업에 대한 투자규제의 기본 원칙
-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의 종류 및 투자회사의 유형과 규제
- 에너지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법제의 구체적 내용
- 에너지산업의 투자유치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법제 환경
- 대상국가별 에너지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법제의 현황

제 2 장 호주의 국가현황 및 에너지 정책과 법제 현황

제 1 절 호주의 국가 및 경제 현황

I. 호주의 국가 현황

1. 일반 사항

호주는 세계에서 6번째로 큰 대륙으로서 하나의 대륙 전체를 차지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남반구에 있는 호주는 우리나라와는 계절이 반대로 된다. 9월에 봄이 시작되어, 12월에는 여름이 되고 3월에 가을이 시작되며, 6월에는 겨울이 시작된다. 호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세계 제3위의 넓이를 가지고 있으며, 약 1,200만 평방km²이다. 공용어는 영어이지만, 대규모 이민에 의한 다양한 종류 및 다양한 민족 구성에 의하여 약 150여 가지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언어 중에서 주된 언어는 이탈리아어, 광둥어, 아라비아어, 베트남어 등이 있다. 기본 통화는 호주 달러와 센트이다. 호주 달러가 20년전에 처음으로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이후, 주요 타국 통화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하강하는 경향에 있었다. 그러나 자원 붐의 사이에는 호주 달러는 타국 통화에 대해서 상승하게 되었고, 이 경향은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¹⁾

국 명	호 주 (Commonwealth of Australia)
위 치	오세아니아주 (동경 113도~153도, 남위 10도~43도)
면 적	768만km ² (한반도의 약35배, 남한의 약80배)

1) 이하에서는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가정보 참조.

제 2 장 호주의 국가현황 및 에너지 정책과 법제 현황

기 후	남부(온대), 북부 및 서부(열대), 내륙(대륙성)
행정구역	6주(state), 2준주(territory)
수 도	캔버라
주요도시	시드니(433만 6천명), 멜버른(380만 6천명) 등
인 구	21,542천명 (2008.12 기준추정치)
민 족	유럽계(85%), 아시아계(9%), 원주민(3%) 등
언 어	영어(공용어), 원주민어(수백의 방언)
종 교	영국성공회(24%), 천주교(26%) 등
건국일	1901년 1월 26일
정부형태	영연방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양원제)
국가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ueen Elizabeth II 영국 여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여왕은 상징적 존재로 실질적인 권한은 없으며, 연방 정부는 연방총독(Governor-genaeral), 주정부는 주총독(Governor)이 영국 여왕을 대리하여 연방 각주 및 각주를 대표함. ○ Kevin Rudd 수상(실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당의 수장으로서 2007년 실시된 총선에서 11만에 준 하워드 연정정권을 물리치고 새로운 수상으로 임명됨.

2. 경제 지표

GDP	US\$ 10,693억 (2008년 추정)
실질 GDP 성장률	2.5% (2008년 추정)
1인당 GDP	US\$ 50,150 (2008년 추정)
실업률	4.3% (2008년 평균)

물가상승률	4.5% (2008년 평균)
화폐단위	Australia Dollar (A\$)
환율	A\$ 1.41 (09.4.27 기준)
경상수지적자	US\$ 525억 달러 (2008년말)
외채	US\$ 10,320억 달러 (2008년말)
외환보유고	US\$ 280억 달러 (2008년말)
기준금리	3.0%
산업구조	농림수산업, 광업 : 8.6%, 제조업 : 10.1%, 서비스업 : 73.3%
교역규모	○ 수출 : US\$ 1,872억 달러 (2008) ○ 수입 : US\$ 1,908억 달러 (2008)
교역국	○ 수출 : 일본, 중국, 한국, 인도, 미국 등 ○ 수입 : 중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교역품목	○ 수출 : 석탄, 철광석, 금, 원유, 석유가스, 알루미늄, 구리, 밀 등 ○ 수입 : 원유, 승용차, 석유제품, 컴퓨터, 의약품, 무선통신기기 등

II. 호주의 경제 현황

호주는 동부 해안지대에 인구 및 경제 활동이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즉, 동부 3개 주가 인구의 77%와 GDP의 74.8%를 점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경제활동면에 있어서도 서비스업과 1차 산업이 발달한 반면 제조업은 취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서비스업이 전체 GDP의 73.3%를 차지하면서 부동산사업서비스, 금융보험,

건설업 등이 특히 발달하였다. 제조업은 저인구밀도와 기술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발달이 부진한 반면에, 기계류(자동차 등), 금속제품, 식품제조업 등에 있어는 비교적 활발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주요 산업으로서 평가받는 광업부문에 있어서는 민간투자와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업투자는 전체 민간 투자의 약 16.1%를 차지하며 2008년까지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에 따라 자원부문의 투자지속 확대 및 건설업, 운송업 등의 연계투자가 유발되면서 호주의 전체적인 경제를 견인해 왔다.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호주 광업은 투자 위축, 수출가격 하락, 수요 감소의 삼중고를 겪고 있으나 경기 회복시에 그 수혜 또한 가장 큰 산업부문으로 평가받고 있다.²⁾

※ 호주의 주요 광물자원

광 종	매장량(EDR) 세계순위 (비중)	생산량 세계순위 (비중)
석 탄	6위 (6%)	4위 (6%)
구 리	2위 (12%)	5위 (6%)
다이아몬드	3위 (17%)	-
금	2위 (12%)	3위
철광석	4위 (13%)	3위 (16%)
니 켈	1위 (38%)	3위 (11%)
우라늄	1위 (34%)	-
아 연	1위 (24%)	2위
납	1위 (30%)	2위

2) 이하 도표는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가정보 참조

광 종	매장량(EDR) 세계순위 (비중)	생산량 세계순위 (비중)
-----	--------------------	---------------

※ 주요 수출품목

(단위 : 10억달러, %)

순 위	품 목	2007		2008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	석 탄	17.4	- 0.8	37.9	117.7
2	철광석	13.7	26.2	25.6	87.3
3	금	9.5	38.4	12.0	26.2
4	원 유	6.7	33.5	9.0	34.4
5	석유가스	5.2	11.6	8.2	58.8
6	인조 커런덤	5.0	9.1	5.3	6.6
7	알루미늄	4.5	8.8	4.5	0.3
8	동 광	3.2	4.5	3.6	11.1
9	밀과 예슬린	1.6	-35.3	3.2	98.0
10	승용차	2.5	13.5	3.1	28.0

그러나 토착자본의 미약과 광업부문의 해외자본 유입으로 외자 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으로 평가된다. 즉, 은행의 해외차입을 통한 민간 외채규모의 증가가 지속되었으며 해외 자본에 대한 이자 및 배당 지급으로 경상적자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호주 정부는 외환관리에 관하여 각별한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호주의 외환관리기구인 중앙은행인 준비은행(The Reserve Bank of Australia)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중앙은행이 통화발행 및 금융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외환정책도 수립, 집행하고 있다.³⁾

※ 호주 자원개발투자시에 고려해야 할 외환제도

○ 세무 목적상 보고해야 할 외환 현금 거래 대상

- 관련 법규 : Financial Transaction Report Act 1988
- 보고 기관 : Australian Transaction Report and Analysis Centre (AUSTRAC)
- 보고 대상 : 금융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선물 거래 업체 및 귀금속 취급 업체가 A\$ 1만 이상의 현금 거래 및 A\$5,000 이상의 외환을 송금하거나 및 수취할 때

○ 환율 제도

국제 수지 방어를 위해 1983년까지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 정부가 환율 결정 및 외환 수급 조절 등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했으나, 1983년 12월 변동 환율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는 환율이 시장 수급에 의해 자유로이 결정되고 있는데, 호주 중앙은행이 지난 20년 간 환율 시장에 개입한 사례는 총 6회에 그치고 있다. 당일 기준 환율 및 이전 시점의 환율 통계는 호주 중앙은행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 무역 대금 결제

L/C 방식의 대금 결제가 일반화되어 있으나 대형 수입상은 D/A 또는 D/P, 소형 수입상은 T/T 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으며 제품 인도 후 입금도 매우 흔하다. 특히 호주 은행이 L/C 발행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담보액이 크고, 절차 지연 등으로 불측의 지급 지연 상태가 있는 경우 등도 있어 L/C 개설을 꺼리는 바이어가 많다.

3) 1959년까지만 하더라도 특별한 외환관리기구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경제성장 및 금융시스템의 발달로 금융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면서, 1959년 연방준비은행법(The Reserve Bank Act 1959)을 제정하여 준비은행이 외환도 관리하게 되었다. 호주는 1983년 12월부터 외환관리를 종전 통제 위주에서 점차 완화하여 환율문제뿐만 아니라 신용장 개설, 해외 투자 및 송금 등 전 분야에 걸쳐 외환관리를 대폭 자유화했으며, 현재는 외국정부 및 외국 기관과 외국 은행의 대호주 투자와 호주 통화의 해외 반출 및 세무 목적 이외에는 외환에 대해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 일반적인 송금의 경우

일반적인 송금의 경우 금융기관에 따라 상이하나 A\$ 5,000 미만인 경우는 A\$ 30, A\$ 5,000~50,000의 경우는 A\$ 50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최근에는 인터넷뱅킹으로 해외 송금을 바로 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해졌으며 수수료 부담도 낮아졌다. 은행에서도 가급적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KOTRA 자료(2009) 참조

※ 업종별 투자유치 동향 (2005년말 누계)

(단위 : AUD 백만, %)

	금 액	비 중
1차 산업	60,177	21.4
- 농림수산업	977	0.3
- 광 업	59,200	21.1
2차 산업 (제조업)	54,202	19.3
3차 산업	153,578	54.6
- 전기, 가스, 수도	8,579	3.1
- 건설업	6,700	2.4
- 유통업	48,240	17.2
- 숙박, 요식업	1,323	0.5
- 운수, 통신	26,422	9.4
- 보험, 금융업	40,573	14.4

	금 액	비 중
- 부동산, 비즈니스서비스	19,405	6.9
- 기타 서비스	2,336	0.8
기 타	13,165	4.7

한편으로 호주의 금융자본의 조달에 있어서는 호주가 원래 금융산업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은행 등 자금 조달원이 매우 다양하며 대출도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다. 최근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율 또한 높아졌으나 경기 침체를 우려하여, 중앙은행은 2008.9.2 금리인하를 단행한 이후 연이어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앙은행에 따르면 경기회복세를 감안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09년 9월 기준 금리는 3.0%이다.

Ⅲ. 산업별 프로젝트 산업 현황

1. 시장 규모

2009년 3월말 기준 호주 프로젝트 시장규모는 전년 동 기간에 대비하여 10.5% 증가한 6329억 호주달러 규모이다. 진행단계 프로젝트 규모는 전년 동 기간에 대비하여 10.8% 증가한 2234억 호주달러, 계획단계 프로젝트는 10.3% 증가한 3956억 호주달러를 기록했다.⁴⁾

2. 프로젝트 범위

500만 호주달러 이상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집계
 - 광업 (Mining & Metal)

4) 이하에서는 <http://www.ga.gov.au/> 참조

- 경제기반 인프라 (Economic Infrastructure) : 도로, 항만, 전력 등
- 농업 (Agricultural Related)
- 상업건축물 (Commercial Building) : 사무실 건물 등
- 제조업 (Other Manufacturing)
- 사회 인프라 (Social Infrastructure) : 병원, 복지시설 등

제 2 절 한국-호주 간 투자 및 수출입 현황

I. 한국-호주간 수출입 동향

2008년 대 호주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인 128.3억 달러 적자를 시현했다. 수출은 41.7억 달러로 07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한 반면, 수입은 180억 달러로 36.0% 급증했다. 대 호주 수출은 8월부터 급격히 둔화되어 10월 이후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극심한 부진을 보였다. 이에 따라 20% 이상까지 상승했던 수출 증가세는 크게 둔화됐으며 수입 증가세도 11월 이후 다소 둔화됐다.

한편, 2009년 상반기 대 호주 수출은 08년 대비 -14.3% 감소한 22억 700만 달러, 대 호주 수입은 12.2% 감소한 69억 52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II. 품목별 한국-호주 수출입 동향

2008년에는 승용차(-19.7%), 무선전화기(-15.9%), 칼라 TV (-14.1%) 등 주력 수출 품목부진이 심화됐다. 반면, 화물자동차, 축전지, 전선, 자동차부품 등이 호조를 보였다. 2009년 상반기에는 승용차, 칼라 TV, 타이어, 자동차부품, 건설중장비 등이 대부분의 수출 주요품목이 부진을 보였다.

2008년에는 유연탄(130.8%), LPG(236.3%) 등 에너지자원 수입은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원유는 가격하락으로 증가세(9.2%)가 크

게 둔화되었다. 금속자원 수입 추세는 동광(52.3%), 아연광(-46.5%), 알루미늄(-10.7%) 등 국제가격 변동에 따라 광종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당류(29.2%), 곡류(46.5%) 등 농작물 수입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가축육류 수입은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2009년 상반기에는 수입품목 중 금속광물 등의 수입은 위축되었으나 석탄, 천연가스 등의 수입은 증가했다.

※ 한국의 대 호주 품목별 수출

(단위 : 백만 달러, %)

순 위	품목명	2008		2009 (상반기)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총 계	18,000	36.0	6,952	-12.2
1	유연탄	4,847	130.8	2,350	32.2
2	철 광	3,126	82.5	1,002	-17.5
3	원 유	3,117	9.2	928	-38.9
4	천연가스	148	20.8	383	481.1
5	알루미늄괴	640	-10.7	242	-27.1
6	가축육류	692	-10.6	215	-44.0
7	동 광	523	52.3	196	-14.2
8	기타금속광물	476	13.3	152	-34.1
9	당 류	381	29.2	144	-10.3
10	금	174	19.2	133	50.4
11	LPG	495	236.3	131	-43.1
12	무연탄	264	82.1	119	76.6

순 위	품목명	2008		2009 (상반기)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3	곡 류	362	46.5	115	-25.8
14	니 켈	157	-57.4	55	-45.3
15	동 괴	214	12.2	51	-58.0
16	소 금	72	31.3	45	38.4
17	낙농품	86	6.7	44	2.9
18	의약품	112	9.6	42	-12.8
19	아연광	217	-46.5	41	-69.6
20	나프타	120	98.8	40	4.1

※ KOTRA 자료(2009) 참조

제 3 절 호주의 에너지 정책 및 법제 현황

I. 호주 에너지 광물산업의 역사

호주의 에너지 산업은 1796년에 시드니 북부의 뉴캐슬에서 석탄이 발견된 이후로 중요한 산업으로서 성장을 지속해 왔다. 1840년대까지는 애들레이드에서 동이 채굴되어 호주에서는 첫 철이 시드니의 서쪽 미타콘에서 채련되었다. 그러나 주도적으로 광업이 주목받게 된 것은 1850년대에 VIC주나 NSW주에서 골드러쉬가 시작되고 난 다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VIC주의 골드러쉬는 특히 현저하였고, 같은 주의 인구가 10년간에 1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증가했다. VIC주에서의 골드러쉬는 1890년대에 까지 계속 되었다. 호주가 연방이 되고 1901년이 된 이후, 호주는 벌써 세계 제일의 광물보유국으로서의 자리를 획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동이나 납 또는 은(NSW주의 서쪽에 있는 Broken Hill에서 생산되는 양이 대부분이었음)도 중요한 광물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금속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많은 광산이 폐쇄되었다. 1930년대에는 QLD주의 Mountain Isa 광산이 운영되기 시작했다. 동광산에서는 당초 은, 납, 아연을 생산하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동도 생산해냈다.

석탄의 생산은 1930년대만 하더라도 몹시 침체된 상태였다. 이것은 대공황과 석유와의 경쟁 등과 같은 산업 불안에 기인하고 있다. 그리고 그 무렵 호주는 광물자원이 별로 풍부하지 않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사실, 1938년부터 1960년간은 매장량이 외국에 대하여 수출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철광석의 수출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에 새로운 광산이 발견되면서 광물자원은 다시 중요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0년대에 주요 철광석 광산과 니켈 광산이 WA주에서 발견되고, 세계적인 광물자원 생산국으로서 국제 무대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이후, 철광석과 석탄 등의 광종에 대하여 비약적인 생산량의 증대가 시작됨으로써, 현재는 세계적으로 유수한 광물자원의 생산국이 되었다.⁵⁾

호주 광업의 발전의 역사의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 1851년 : NSW주 Bathurst근교에서 경제성이 있는 금광석 발견
- 1870년대 후반 : 1880년대 호주가 주석의 세계적 생산국이 됨
- 1883년 : Broken Hill로 유망한 광산을 발견 (많은 산업의 기점이 됨)
- 1890년대 : Kalgoorlie에서 금의 표사광산을 발견
- 1919~1920년 : 제1차 대전 종결, 금속 가격의 붕괴, 광물자원 수출 저하
- 1923년 : Mount Isa 납, 아연, 은, 동광을 발견

5) 이하에서는 <http://www.dfat.gov.au/> 참조

- 1960년대 후반 : 호주가 석탄, 보크사이트, 철광석, 니켈, 마그네슘, 티탄, 산화 지르코늄의 주요 생산국이 됨
- 1965년 : 탐광 투자금액 2200만 호주 달러가 됨
- 1975년 : Olympic Dam(SA주) 동, 금, 우라늄 광산을 발견
- 1981~82년 : 탐광 투자금액 5억 7600만 호주 달러 증가
- 1992년 : 마보 판결, 연방최고법원 선주권의 존재를 인정함.
- 1996~97년 : 탐광 투자금액 12억 호주 달러 증가
- 2004~5년 : 탐광 투자금액 21억 22천만 호주 달러 증가

현재 호주의 광물산업은 성숙기의 단계에 이르러서, 일반적으로는 광업생산의 성장률은 경제의 성장률과 동일한 비율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광물산업은 자본, 노동, 신기술의 집약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호주는 외국자본의 진출에 대하여 개방적이고, 외국자본에 의한 투자를 장려하는 한편 이를 지원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평가하는 메커니즘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서, 독점금지법이 있기는 하지만 세계적인 대기업에 의한 광물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 이외는 일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의 경향으로 외국 기업에 의한 호주 기업의 합병 흡수가 증가하고도 있다.

호주의 광물 수출량은 1980년대 이후 연간 약 5%의 비율로 확대해왔다. 다만 이 증가율은 모든 광물에 대해서 일정한 것은 아니다. 어느 광물은 수출량이 현저하게 증가한 반면에, 다른 광물은 수출량이 축소하는 경향이다. 에너지자원 산업의 수출총액 증가율은 수출량의 증가율보다 월등하게 높다. 200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광물가격이 상승한 결과로 탐광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확대되었다. 현재로서는 자원의 생산량과 호주 경제에 있어서 자원의 중요성은 지속

적으로 확대되고 있다.⁶⁾

II. 호주의 에너지 정책 현황

1. 현 호주 정부의 정책노선

호주는 2007년 총선에서 야당이었던 노동당이 집권하게 됨으로써, 에너지 정책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정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시도하였다.⁷⁾ 현 호주 정부의 집권당인 노동당의 Kevin Rudd 총리는 전 정부였던 Howard 정부가 지하자원의 붐에 따른 경기호황을 누리기만 하고, 향후에 대비한 비전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집권시에 국정운영의 3대 중장기 과제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1) 지하자원의 붐 이후에 대비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교육개혁, 브로드밴드 등 정보통신, 의료 및 인프라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2) 기후변화 대응 및 물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토의정서 비준 및 재생에너지보급 확대 등을 추진하며, (3) 공정한 노사관계 조성을 위하여 노사관계법 개정을 통한 단체교섭, 부당해고 심판청구제도 등 부활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호주 정부의 새로운 정책노선의 중심에는 호주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움직임 등이 배경으로서 작용하였으며, 현재까지 이러한 정책지표는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하고 있다.

한편으로, 다자 또는 양자간 무역협정으로 대표될 수 있는 대외경제 정책에서 노동당은 무역정책에 있어 다자간 협상을 우선시하고, 양자

6) <http://www.dfat.gov.au/> 참조

7) 노동당의 Kevin Rudd 총리의 경제정책은 근본적으로 Howard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노사관계, 기후대책 등 쟁점이 되었던 과제를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즉, 총선에 즈음하여 노동당의 경제정책이 전정권의 경제정책과 변화가 없다는 점이 심하게 비판을 받았었으나,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대응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대대적인 변화와 중심의 이동을 나타냄으로써 현 호주 정부의 정책에 관한 큰 특징을 이루게 된다.

및 지역별 FTA는 보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호주 노동당정부는 기존의 FTA협상 뿐만 아니라, WTO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전망으로 관측된다.

FTA의 경우는 그간 호주에 실질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했다고 비판⁸⁾해왔기 때문에 협상내용이나 과정이 보다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세정책으로 대표될 수 있는 재정·조세정책은 현재의 GDP 1% 수준(호주달러 100억불)인 연방재정의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주택 구입, 교육, 의료 등 가정의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조세정책은 자유당정부의 340억불 감세 및 소득세율 단계 축소 등 공약에 비해, 향후 3년간 310억불 감세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고세율의 인하(45%→40%) 및 감세재원을 의료, 교육 등 가정지출을 환급해주는 등 복지지출을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 호주의 에너지 정책

(1) 기존 호주의 에너지 정책

호주 정부의 기존에 추진하였던 자원개발의 정책기조는 호주정부 간협의회 COAG(The Council of Australia Government)는 2001년 6월에 발표된 정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미래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에너지정책 기본방안(National Energy Policy Framework)을 발표하였다. 즉, 그 내용은 ① 호주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고 경쟁력 있는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 ② 호주 에너지 자원의 효과적 개발 및 확보와 수출시장 확대 촉진, ③ 에너지 생산 및 사용에

8) 노동당의 FTA비판은 협상타결(실적)에 급급했고, 환경이나 지적재산권을 포함하지 못했으며, 사전 타당성검토도 부실하고 협상과정도 공개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되었다.

따른 국내의 환경문제에 효율적 대응이다.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진하였다.

(i) 호주가 보유한 풍부한 에너지자원의 효과적 탐사 및 개발을 위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이를 위해 정부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 개발과 국제 협력사업 확대

(ii) 보다 청정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배출가스 절감 기술개발에 A\$5억 자금 지원, 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업화에 A\$1.34억 등)하고, 환경보호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주도적 참여

(iii)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효율적인 에너지시장체제 구축(2012년까지 연료소비세 부담을 A\$15억 감축 등)과 에너지시장 구조개혁(연방차원의 에너지 단일 규제기관 신설 등)의 지속적 추진

(iv) 국내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체제 구축과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안보체제 강화

또한, 호주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풍부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해외 수출시장 확대를 위하여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등亞太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FTA를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호주 정부는 또한 에너지자원 주요 수입 국가들과 정기적인 자원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양자 간 에너지 광물자원에 대한 교역 및 투자 등에 대한 협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9)

9) 현재 한국(1980)을 비롯하여 일본(1985), 중국(1989), 인도네시아(1989), 대만(1992), 필리핀(1994), 인도(2000), 미국(2003), 멕시코(2005) 등 9개 국가와 고위급 정기 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2004년 8월 30일 자원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호주 정부는 에너지자원의 대외협력 확대를 위해 상기 양자간, 다자간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함과 아울러 민간분야와 상호 긴밀한 의사소통 및 협력을 통하여 에너지자원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자원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호주 총리를 비롯한 통상 장관, 산업자원 장관 등 정부 주요 각료들이 주요 에너지 수요 국가의 정상 및 주요 인사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적극적인 에너지 자원 세일즈 활동(안정적 공급선, 우수한 품질, 국가체제의 안정성 등을 홍보)을 전개하고 있다.

과거에 호주의 전 총리인 하워드 총리는 중국과 수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광둥성)에 호주 수출 사상 최대 규모인 A\$250억(연 3백만 톤, 25년간 공급)의 LNG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2005년 1월에는 호주 산업자원 장관이 미국, 멕시코, 한국 등을 방문하여 LNG 세일즈 외교를 전개한 바 있다.

이처럼 호주 정부는 각 민간업체가 상업적인 고려에 의해 수출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민간 세일즈 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민간분야와 역할을 분담, 범정부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안을 발굴하여 이에 외교적인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적 세일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호주 정부의 자원 지원정책은 민간부문 활동과의 시너지 효과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과 정부가 상호 긴밀한 의사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자원 외교 전략을 수립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 현재 추가된 호주의 에너지 정책

현 호주 노동당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은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대응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다른 경제정책은 전 정부

의 정책과 크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책은 총선 당시부터 노동당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선거공약이었으며, 현재에 있어서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할 것이다.

즉, 2007년 총선에서 Kevin Rudd의 노동당 정부가 승리하여 보수연합의 Howard정부에 대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었는데, Howard정부는 미국의 부시 정권과 함께 기후변화 국제협상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왔으며, 기후변화 정책과 재생에너지 정책에 소극적이고 원자력정책에 적극적이었지만, Rudd정부는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정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Rudd정부는 2008년 1월의 총리 취임 직후 첫 활동으로 교토의정서를 승인하고 발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회의에 참석하여 승인서를 전달하였다. 다음과 같은 Rudd정부의 2007년 선거공약을 살펴보면, 현재 호주 정부의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에 관한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 Kevin Rudd 정부의 2007년 공약

- 배출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장형성 및 운영기반 구축 계획 수립
- 탄소 배출의 감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계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수요측면의 관리를 위한 방안 운영
- 국가청정석탄계획(National Clean Coal Initiative)과 상향된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여 탄소배출감축과 저탄소산업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공급측면의 관리 방안 구축

한편으로, 지하자원의 부국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던 호주의 에너지자원에 관하여, 자원개발 및 수출확대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철도, 도로, 항만 등 인프라확충에 적극 투자할 전망으로 예측된다. 또한, 우라늄 개발정책은 노동당의 신규광산 개발금지 정책에 관하여

신규 개발을 허용하되, 엄격한 조건하에서 수출을 확대키로 수정하고, 농축 및 원전 등은 강력히 반대하는 정강을 채택하였다.

다만, 정강수정에도 불구하고, 노동당 주정부는 SA 및 NT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우라늄 신규개발 및 원전도입 등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하워드 정부에서 추진하려했던 원전 도입정책은 추진이 어려울 전망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호주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정책은 원전보다 청정석탄기술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주력할 전망이고, 이에 관한 관련 입법의 재·개정 작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Ⅲ. 호주의 에너지산업 및 자원 현황

1. 개 요

호주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자원 수출국으로 농업이나 광업 등 1차 산업이 가장 중요한 외화 획득 수단이다. 이에 반하여, 전반적으로는 제조업의 기반이 취약하고, 3차 산업의 비중이 큰 만큼, 국내 자본의 외국 의존도가 높으며, 외국 자본이 호주 국내의 경제 개발과 자원 개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호주는 3차 산업이 매우 발달했으며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1차 산업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에 반하여, 제조업은 GDP 기여율이 12%에 불과해 취약한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다. 호주 수출은 농림 수산물에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동남아시아 및 중동 시장을 타깃으로 생산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호주의 산업을 가장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전통적인 산업은 광업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자원산업이라고 보아야 하며, 해외투자자본의 유입도 이러한 에너지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¹⁰⁾

2. 지하자원 보유 및 생산 현황

(1) 일반 현황

현재 호주는 세계 자원보유 및 생산면에서 주재국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국토 총 면적이 한반도의 약 35배(7,686,850 평방km)에 이르는 호주는 주요 광산물 수출국으로 OECD 국가 중 수출은 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석탄 및 철광석 수출국이다.

이밖에 주요 광물 자원으로 보크사이트, 동, 주석, 은, 우라늄(세계 1위), 니켈, 텅스텐, 중사, 연, 아연, 다이아몬드 등이 있다. 호주는 광물 자원 외에도 원유(세계 4대 수출국)와 액화 천연 (LNG., 5위 수출국)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2) 지하자원 현황 및 생산 동향

① 원 유 (Petroleum)

호주의 원유 매장량은 35억 배럴로 세계 총 매장량의 0.3%를 차지하며, 주요 매장 지역은 남호주 Bass Strait(18억 배럴) 및 서호주 Carnarvon Basin(11억 배럴) 지역이다. 원유는 호주의 4대 수출 품목으로 총 수출의 4.2%(연 A\$ 50억)를 차지하고, 주 수출국은 싱가포르, 한국, 일본 등이다.

호주 원유 생산 및 탐사협회(APPEA; Australian Petroleum Production and Exploration Association Ltd.)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 호주 원유 생산량은 전년보다 3.0% 감소한 1억2천만 배럴로 나타났는데, 호주 원유산업의 경기가 점차 완만해지고 및 탐사 비용이 70%가량 상승한

10) 이하에서는 <http://www.dfat.gov.au/facts/> 및 KOTRA 국가정보 참조

것이 감소의 주원인으로 평가된다.

주요 유전으로는 Roller, Skate, Bass, Wanea-Cossack, Laminaria, Corallina, North Rankin, Goodwyn, Gorgon 등이 있다.

② 천연가스 (LNG)

천연가스는 70년대 서호주 북서해상 지역인 North West Shelf (NWS)에서 발견되어 생산이 시작됐고, 1989년부터 LNG수출을 개시하여 세계 제5위 및 아태 지역 제3위의 수출국으로 세계 LNG 수출의 7%를 담당하고 있다.

호주의 LNG 수출은 연 A\$ 24억으로 주로 장기 공급 계약에 따른 일본지역 수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와서 중국, 한국 등 수출 대상 지역을 다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호주는 세계적 수준의 천연가스(natural gas)보유국으로 그 매장량이 아태 지역에서 최대 수준인 약 100Tcf (trillion cubic feet)로 세계 총 매장량의 2%를 차지하고, 현 생산량 기준시 약100년 이상 공급이 가능한 양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탐사를 통해 추가 발굴 가능한 잠재 보유량도 50~170 Tcf 정도 존재한다.

주요 매장지역은 서호주의 North West Shelf(매장량 40Tcf), 남호주의 Cooper/Bass Basin(매장량 10Tcf) 등이며, 그 외 서호주 주변 해상 및 티모르 해역에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다.

LNG의 경우 서호주, NWS에서 연 12백만 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주요 프로젝트로는 서호주 지역의 Gorgon(2010년부터 연 4백만 톤 생산) 및 Scott Reef/Brecknock (2014년부터 연 4백만 톤 생산), 북호주 및 동티모르 해협 근역의 Bayu-Udan(2006년부터 연 3백만 톤 생산) 및 Sunrise 광구 등이 있다.

한국(가스공사)은 지난 2003년 최초로 호주와 LNG 중기 도입계약(7년간, 350만 톤)을 체결하였다.

③ 석 탄 (Coal)

세계 총 매장량의 8.3%에 해당하는 약 821억 톤의 석탄 매장량(향후 230 여년 채굴 가능)을 보유하고 아울러, 세계 제1위 석탄 수출국으로 전 세계 석탄 교역의 32%를 차지한다. 연간 2.7억 톤을 생산하여 세계 제4위 생산국(세계 총 생산의 7%)이며, 국내생산의 79%(2.2억 톤)가 해외로 수출된다.

탄종별로는 제철용탄(coking coal)이 세계 총수출의 50%이상, 발전용탄(thermal coal)이 세계 총수출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석탄은 호주의 최대 수출품목으로 총 수출의 10%를 차지하고, 주요 수출국은 일본, 한국, 인도 등이며, 한국은 석탄 총 수입의 약 40%를 호주에 의존하고 있다.

주요 석탄 생산지역은 호주 동부지역인 퀸즈랜드 주(주로 제철탄, 380억 톤)와 뉴사우스웨일즈 주(주로 연료탄, 매장량 320억 톤)로 호주 석탄 생산의 대부분(95%)을 차지하고 있다.

빅토리아 주는 호주 갈탄 생산량의 전량을 차지하며, 호주는 세계 갈탄 매장량의 24%, 세계 생산량의 8%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뉴사우스웨일즈와 퀸즈랜드 주가 호주 석탄(black coal) 생산량의 96% 이상을 차지했으며, 2009-10년 석탄(black coal)(판매용)의 생산량을 3.64억 톤으로 계획하고 있다.

④ 우라늄 (Uranium)

호주는 경제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확정 매장량(RAR: Reasonable Assured Resources, US\$ 80/kilogram의 비용으로 회수 가능한 자원) 714,000톤의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RAR의 27%로 세계 최대 매장국이다.

호주의 6개 주요 우라늄 광상으로는 올림픽 댐(남호주, 세계 최대 매장지), 엘리게이터 강 주변의 Ranger와 Jabiluka, Koongarra(노던 테러

토리), Kintyre와 Yeelirrie(서호주)가 있다.

2006년 호주는 Ranger(산화 우라늄 4,736톤, 노천 채광법), 올림픽 댐(3,382톤, 갱내 채광법), Beverley(825톤, 용해채광법) 세 곳에서 우라늄을 채광한다. 총 생산량은 8,943톤으로 2005년보다 20% 줄어들었으나, 세계 생산량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2대 우라늄 생산국(캐나다, 25%)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호주는 평화적 사용을 보장하고 군사용 사용을 금지하는 엄격한 기준 하에 2006년 산화 우라늄 8,660톤(A\$529m)을 수출함. 한국은 연간 천연우라늄 3,000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호주 수입이 약 30%(1,000톤)를 차지하고 있다.

⑤ 니켈

호주는 세계 최대의 니켈 매장국으로 세계 매장량의 19.3%인 2,700만톤이 매장되어 있다. 호주의 니켈 생산량은 연간 약 19만톤이며, 서호주의 Ravensthorpe와 타즈마니아의 Avebury에서 새로 생산이 진행되면서 호주의 Murrin Murrin의 생산부진을 상쇄하고 있다.

제련된 2007/08 니켈 생산량은 전년 대비 3% 감소한 약 114천 톤이었으며, 이는 Kalgoorlie 제련소와 Yabulu 제련소의 보수로 인한 생산부진이 원인이었음. 2008년 상반기에 Yabulu 제련소의 생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감소를 상쇄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07/08년 니켈 수출소득은 약 A\$58억으로 31% 감소했으며, 이는 니켈 단가가 세계적으로 낮고, 호주 달러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⑥ 구 리

세계 구리 매장량의 4.6%인 43백만 톤이 매장되어 있다. 2007/08년 호주 구리 광산에서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2% 가량 상승한 878천톤

이였으며, 퀸즈랜드의 Lady Annie 광산(연간 25,000톤), Matrix Metals Leichhardt 광산(연간 10,000톤), 서호주의 Jabiru Metals Jaguar 광산(연간 9,600톤)이 2007년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구리 생산을 개시하였다. 2007/08년 호주는 제련된 구리, 구리 광석 및 정광의 수출로 약 A\$62 억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제련한 구리의 수출 물량은 13% 가량 상승했으며, 구리 정광의 수출 물량은 약 4% 가량 상승하면서 낮은 수출 가격 및 호주 달러의 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였다.

⑦ 아 연

호주는 세계 아연 매장량의 23.3%인 42백만 톤을 보유한 세계 2위 아연 매장대국이다. 아연광의 2007/08년 생산량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약 1.5백만 톤이었다.

2007년 9월 후반 Mount Isa의 납-아연 광산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4/4분기 정광 생산량이 줄어들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Broken Hill, Endeavor, McArthur River 광산에서의 생산 증가로 감소분이 상쇄되었다. 2007/08년 제련된 아연의 생산량은 3%가량 감소한 약 480천 톤이었는데, 이는 Mount Isa에서의 화재로 인해 아연 정광의 생산 감소 및 그에 따른 Townsville 제련소 4/4분기 생산 감소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안정적인 수요와 생산량의 증가로 2007/08년 아연 광석 및 정광의 수출은 8% 가량 상승한 약 2.1백만 톤 기록하고 있다.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련된 아연의 수출물량도 2007/08년 증가하였으나 낮은 단가와 호주 달러 상승으로 전체 수출액은 감소하고 있다.

⑧ 철광석

호주는 세계 매장량의 10.7%인 16억 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4위 철광석 매장대국이다. 철광석 생산량은 2006/07년 288백만 톤으로 24백만 톤이 증가하였으며, 2007/08년에는 312백만 톤으로 역시 24백만

톤 가량 증가하였다. 이는 과거 5년간 철광석 탐사 및 개발에 투자한 노력의 결과이다. 2007년 호주의 철광석 수출은 전년 대비 9% 가량 상승한 약 269백만 톤이었으며, 2008년에는 13% 가량 상승, 305백만 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가 상승과 수출물량의 증가로 철광석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2006/07년 호주의 철광석 수출액은 21% 가량 증가한 약 A\$155억이었으며, 2007/08에는 16% 가량 상승한 약 A\$180억으로 추산된다.

⑨ 금

호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은 세계 2위 금 생산국이다. 전국적으로 금광이 산재해 있으며 대부분이 노천 채굴법으로 생산된다. 2005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탄광은 빅토리아 주의 Ballarat East 금광과 퀸즈랜드의 Twin Hills 금광 등이다.

향후 2년 내 운영을 시작할 탄광으로는 빅토리아 주의 Bendigo 탄광, 서호주의 Fortnum 탄광, 퀸즈랜드의 Gully탄광, Union Reef 탄광 등 다수가 존재한다.

금 생산 능력의 증대, 국제 시장에서의 금값 상승, 중국, 인도, 중동의 금장신구 수요 증대로 호주의 금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⑩ 망 간

호주는 세계 최대 망간 생산국으로 Bootu Creek 탄광, Groote Eylandt 탄광, Woodie Woodie 탄광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노던 테리토리 소재 Bootu Creek 탄광은 2005년 말에 운영을 시작, 연간 생산량이 6십만 톤에 이르며 전량 수출 예정이다.

역시 2005년 확장을 마친 Woodie Woodie 광산은 연간 생산능력이 1백만 톤 증가하였다.

⑪ 알루미늄

2006/07년에 알루미늄 생산량이 4% 증가(18.5백만 톤)하였다. 이러한 생산량의 증가는 퀸즈랜드 글래스톤 소재의 Rio Tinto's Yarwun 제련소에서 30% 증가를 달성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2007/08년에는 노던 테리토리 Gove 제련소(연 생산량 1.8백만 톤)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전체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2006/07년 호주가 알루미늄 수출액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A\$62억이며, 이는 높은 수출단가와 늘어난 수출물량 덕분으로 추정된다. 2007/08년에는 알루미늄 가격의 하락으로 수출액이 감소하였다.

⑫ 다이아몬드

호주는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생산국으로 주요 생산지는 서호주의 Argyle 탄광이다. 2005년 Rio Tinto사는 갱내 봉락식 채굴법 개발에 A\$7억6천만 투자. 2008년 완전 가동 후, 갱내 생산량은 Argyle 탄광 총 생산량의 30% 차지 전망. 노천채굴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 주요 광물 자원 부존 현황¹⁾

광종	호주(A)	전세계(B)	(A)/(B)(%)	순위
아연(천t)	80,000	460,000	17.4	3
이트륨(t)	110,000	610,000	18.0	3
일메나이트(천t)	160,000	1,200,000	13.3	4
카드뮴(t)	91,000	1,600,000	5.7	5
금(t)	6,000	90,000	6.7	2
은(t)	37,000	570,000	6.5	5
코발트(t)	1,700,000	13,000,000	13.1	3

제 3 절 호주의 에너지 정책 및 법제 현황

광 종	호 주(A)	전세계(B)	(A)/(B)(%)	순 위
지르코늄(천t)	30,000	72,000	41.7	1
주 석(t)	300,000	11,000,000	2.7	8
탄 탈(t)	80,000	150,000	53.3	1
동(천t)	43,000	940,000	4.6	6
토 립(t)	340,000	1,400,000	24.3	1
납(t)	28,000	140,000	20.0	2
니 켈(t)	27,000,000	140,000,000	19.3	1
하프늄(t)	600	1,100	54.5	1
보트사이트(천t)	7,900,000	32,000,000	24.7	2
마그네슘(천t)	120,000	3,600,000	3.3	6
망 간(천t)	160,000	5,200,000	3.1	3
리 립(t)	260,000	11,000,000	2.4	7
루 탈(천t)	31,000	100,000	31.0	1
희토류원소(t)	5,800,000	150,000,000	3.9	4
철광석(백만t)	25,000	180,000	13.9	3

※ 주요 에너지 · 광물자원 생산 추이

광 종	단 위	2001/ 02	2002/ 03	2003/ 04	2004/ 05	2005/ 06	01/02 대비 05/06 증가율
보크	백만톤	55	54	56	56	85	5.5

11) 이하 도표는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가정보 참조

제 2 장 호주의 국가현황 및 에너지 정책과 법제 현황

광 종	단 위	2001/ 02	2002/ 03	2003/ 04	2004/ 05	2005/ 06	01/02 대비 05/06 증가율
사이트							
동	천 톤	2,577	2,590	2,555	2,340	2,672	3.7
금	톤	296	265	278	267	266	-10.1
철광석	백만톤	176	185	199	223	252	43.2
납	천 톤	1,000	1,020	970	960	997	-0.3
망 간	천 톤	1,948	1,850	2,472	3,094	3,606	85.1
니 켈	천 톤	195	193	183	185	192	-1.5
일메 나이트	천 톤	2,092	1,843	2,069	1,910	2,006	-4.1
금홍석	천 톤	209	207	208	154	174	-16.7
탄탈림	천 톤	181	186	189	196	203	12.2
우라늄	톤	9,549	7,823	9,172	9,569	10,964	14.8
아 연	천 톤	2,697	2,715	2,806	2,536	2,506	-7.1
역청탄	백만톤	258	274	275	286	305	18.2
갈 탄	백만톤	68	69	69	70	71	4.4
다이아 몬드	천캐럿	22,475	30,676	32,006	24,310	32,446	44.4
원 유	백만리터	38,705	36,100	33,320	27,876	25,372	-34.4
천연가스	백만m ³	31,524	32,136	33,159	33,259	37,267	18.2
LPG	백만리터	4,056	4,647	4,681	4,639	4,628	14.1

(3) 자원 프로젝트 현황

① 시장 규모

2009년 3월말 기준 호주 프로젝트 시장규모는 전년 동 기간에 대비하여 10.5% 증가한 6329억 호주달러 규모이다. 진행단계 프로젝트 규모는 전년 동 기간에 대비하여 10.8% 증가한 2234억 호주달러, 계획 단계 프로젝트는 10.3% 증가한 3956억 호주달러를 기록했다.

② 에너지자원 산업 프로젝트 현황

광업 프로젝트 규모는 1938억 호주달러로 전체 프로젝트시장의 35.6%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광업 프로젝트 규모는 연말 대비 16.1%로 증가했는데,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 중대형 프로젝트의 고려단계(under consideration) 이행, 대형 광물 프로젝트의 건설 개시(under construction) 이행 등에 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에너지 및 금속 광물의 경우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 그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분야이므로 이 같은 광업 프로젝트 증가세는 주목할 만한 동향이라고 할 수 있다.¹²⁾

※ 광업 프로젝트 현황 (2009년 3월)

(단위 : A\$ 억, %)

		석 탄	원유, 가스	광 물	기 타	계
시행중	금 액	36	149	225	19	430
	증가율	-1.9	-0.6	58.6	0.2	23.4
시 행	금 액	1	116	13	0	130
	증가율	-	14.1	13	0	130
고려중	금 액	66	820	379	7	1,271
	증가율	-	77.1	14.1	44.0	46.9
가능성	금 액	69	234	100	17	419

12) 이하 도표는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가정보 참조

		석 탄	원유, 가스	광 물	기 타	계
	증가율	-	-28.9	-43.2	-7.2	-29.2
계	금 액	172	1,318	718	43	2,251
	증가율	-0.4	26.4	5.5	1.7	16.1

IV. 호주의 에너지 개발 관련 기관

1. 연방 정부 주무 관청 (Commonwealth Government Agencies)

연방 정부에서는 광업활동에 직접 관련한 기능을 가지는 관청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관청이 있다. 이러한 관청이 해외투자자에게 있어서 최초의 접촉창구가 된다. 호주는 연방제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기관은 비자의 취득 및 외자 투자신청의 허가와 유산 보호 그리고 환경관련사항(국제 조약 관계, 선주권 등) 등 국가수준의 정책을 소관하고 있어서, 사업활동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협의, 허가 및 인가 절차, 감독 업무 등은 각주와 준정부의 정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¹³⁾

2. 산업관광자원부 (Department of Industry, Tourism and Resources, DITR)

산업관광자원성(DITR)의 소관 사항은 호주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사항인 혁신과 투자 그리고 국제적 경쟁력 향상 등을 구축하기 위한 각종 산업정책이나 사업 원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호주의 제조 부문, 자원 부문,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의 국제 경쟁력 및 혁신적 기술 기능이나 인프라의 개발, 해외투자의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¹⁴⁾

13) 이하에서는 <http://www.australia.gov.au/> 참조

14) <http://www.disr.gov.au> 참조

3. 외무 무역부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

외무무역성(DFAT)은 연방 정부 정책에 따른 무역정책과 외무 정책을 소관하고 있으며, 호주의 국익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외무 무역성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예시할 수 있다.¹⁵⁾

- 호주의 안전 보장 강화
- 호주 경제, 고용의 성장 및 생활수준 향상에의 기여
- 호주의 국익을 높이는 글로벌인 협력 관계 강화
- 해외의 호주사람 거주자, 여행자에게의 지원
- 호주의 외무 무역정책에 대한 국민에게의 계몽, 국제적 선전

4. 다문화이민선주민부 (Department of Multicultural, Immigration and Indigenous affairs, DIMIA)

다문화이민선주민관계부(DIMIA)의 소관 사항으로서 다문화, 출입국, 선주민 관계에 관한 다음과 같은 분야를 수행한다.

- 외국인의 출입국, 체재
- 국경 이민 관리
- 이민 인도적 입국자의 정주에 관한 협의
- 시민권
- 민족 관계
- 다문화 관계
- 선주민 및 화해 문제

DIMIA는 합법적인 입국이나 체재를 통하여 호주의 사회 및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호주의 시민권이나 문화적 다양성을 감독하여 이민자를 공평하게 참가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한다.¹⁶⁾

15) <http://www.dfat.gov.au> 참조

5. 환경유산부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Heritage, DEH)

환경 유산부(DEH)는 자연 환경, 문화적 유산을 포함한 환경보호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소관사항으로 하고 있다. 또한, 업계 단체, 기업, 지역사회, 주정부 및 준정부의 정부와 협력하고, 대기 보전, 환경 보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자연 및 문화적 유산의 보전, 평가를 위하여,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보전법 1999(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를 포함한 환경 관련 법규의 관리 및 실행을 소관사항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호주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 환경 조약에 관한 일도 소관사항으로 하고 있다.¹⁷⁾

6. 외국투자규제위원회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FIRB)

재무부(Treasury)의 외국투자규제위원회(FIRB)는 외국 기업에 의한 호주의 직접투자신청(호주 기업의 흡수 합병 포함)을 접수받아서, 호주의 국익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FIRB는 심사 및 조언을 실시하고 최종결정 권한은 재무부장관이 가진다.¹⁸⁾

7. 연방해외투자촉진청 (Invest Australia)

산업관광자원부(Department of Industry, Tourism & Resources, DITR)의 외청으로서 연방해외투자촉진청은 호주의 사업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해외 투자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방해외투자촉진청은 외국 투자자를 적절하게 산업 및 정부 관계자에게 소개하는 것과 동시에 정부의 규칙, 조건에 관한 정보를 외국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2003년 7월에 연방해외투자촉진청은 Axiss Australia와 통합되었다.

16) <http://www.immi.gov.au> 참조

17) <http://www.environment.gov.au/> 참조

18) <http://www.firb.gov.au> 참조

Axis는 1999년에 호주를 아시아 지역에서의 글로벌 금융 서비스의 중심으로서 평가하기 위하여 연방 정부에 의해서 설립된 조직이다.¹⁹⁾

※ 에너지산업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

호주의 정부제도는 연방 정부, 주 정부, 지방정부의 3층 구조로부터 성립되고 있다. 호주의 실정법에 의하게 되면, 에너지광물자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에 귀속되고, 정부 자체는 상업적인 탐사나 개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는다. 에너지산업에 있어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의 각각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연방 정부

- 국가적인 정책의 결정 및 방위, 외교, 국고 세입, 재정, 세제 등에 관한 사항의 결정
- 외국 투자의 가이드 라인 설정
- 산업관련 이민
- 경쟁 정책
- 무역과 세관
- 기업법
- 주민의 토지 소유권

□ 주정부와 준정부

- 광물자원 개발권의 관리와 분배
- 기본적 토지 관리 정책
- 조업 규제 환경위생 및 노동 안전,
- 광물 생산세(로열티)의 징수

□ 지방 정부

- 지방 개발 계획의 입안 및 지역사회 정책

19) <http://www.investaustralia.com.au> 참조

V. 녹색에너지 산업 현황

1. 개 요

호주는 녹색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지목하고 태양광, 풍력발전 등 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Kevin Rudd 수상이 이끄는 현 정부의 기후정책 목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0년 대비 5~25%, 2050년까지 60% 감축하는 것이다. 202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재생에너지발전목표(RET) 법안이 2009년 8월 20일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재생에너지발전목표법안의 통과로 호주의 연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현 수준보다 45,000GWh가 증가한 약 60,000GWh에 달하게 되며 이의 달성을 위한 막대한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별로는 호주의 자연조건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시장을 주도할 전망이다.²⁰⁾

2. 풍 력

세계적으로 2008년도 초에 전세계 발전용량이 100기가를 돌파한 풍력발전은 태양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원이 고갈될 염려가 없으며, 석탄발전에 비해 2배 정도인 발전단가도 기술발전 속도로 보아 10~15년 안에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여, 현재 가장 매력적인 재생에너지로 평가되고 있다. 발전효율도 20년 전의 풍력터빈에 비해 약 200배 향상되고 있다. EU는 2020년까지 총 발전용량 중 12%, 미국은 2030년까지 20%를 풍력발전으로 충당계획, 중국은 2020년까지 9000억 위안을 투입하여 100기가 풍력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7년 기준 독일이 22기가 용량으로 선두이고 미국, 스페인, 인도 순으로 기록

20) 이하에서는 <http://www.climatechange.gov.au/> 참조

된다. 덴마크는 전체발전량 중 20%, 스페인 11%, 독일 5%를 풍력발전으로 충당한다. 육지와 해안바람보다 앞바다 바람이 더욱 강하고 지속적이라는 사실로 인해, 향후 해상풍력발전(Offshore Wind Farm)이 더욱 각광받을 전망이다. 특히, 미국이 해상풍력발전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09. 4월) 미국 최초로 메사추세츠주, 로드 아일랜드주에 건설 추진 중에 있으며, 뉴욕, 뉴저지, 걸프만 및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구상 중에 있다.

EU의 경우는 2030년까지 예상되는 풍력발전 투자계획에 의하면 2020년경에는 해상풍력발전 비율이 육상풍력발전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 이미 상용화하고 있다.

호주는 매우 양질의 풍력발전 조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바람의 질과 기존 전력계통과의 연계성면에서도 우수하다. 특히, 전력난이 심한 여름에 가장 효율적인 풍력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풍력발전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2008년 기준 총 50여개 풍력발전소에서 1.3기가와트의 풍력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8년도에 건설된 신규풍력발전소들의 발전용량만 총 482MW에 달하고 있다. 2009년도에 555MW 규모의 6개 신규 프로젝트가 가동될 계획으로 이미 운영되고 있거나 정부에서 계획 또는 인가한 프로젝트, 모든 주에 제출된 프로젝트를 모두 합하면 풍력발전량은 5.8 GW에 달하고 있다. 지역면에서 보면,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의 풍력발전량이 전체의 51%, 빅토리아주가 30%를 차지하여, 이 두 지역이 호주 풍력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풍력에 의한 전력생산은 호주 전체 전력 생산의 0.7%를 차지한다. 연평균 전력생산은 2,500GWh로 추산된다. 현재 운영중인 풍력발전소는 70곳이며 남호주주(South Australia)에 호주 전체 풍력발전시설의 51%가 위치하고 있다. 2008년 기준 총 48개 풍력 프로젝트가 진행 중

이며 이 중 진행단계(착공 또는 최종 검토)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는 7개이다. 이 같은 프로젝트 계획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후 호주 프로젝트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바 풍력 프로젝트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토 단계(타당성 조사 또는 기초 조사)에서 진행단계로 이행하는 프로젝트의 수가 급격히 감소해 자금조달상 어려움 및 투자심리 감소를 반영하고 있다. 풍력 발전 시설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는 없으며 풍력협회(AUSWIND)는 이 같은 점을 비판하고 있다. 단, 대형 전력 회사가 풍력 시설에 의해 전력을 조달할 경우 받게 되는 간접적인 수혜는 존재한다.

■ 최근 NSW주에 호주 최대의 풍력발전소 건설 승인 발표 (2009. 6월)

- 프로젝트명 : SILVERTON WIND FARM DEVELOPMENT
- 개발업체 : EPURON 과 Macquaries Capital 합작회사
- 위 치 : NSW 서부 브로큰힐의 SILVERTON 지역
- 용 량 : 1천 MW 규모 (총 터빈 수 : 598개)
- 공사시작 : 2010년 1사분기
- 완 공 : 2010년 하반기에 첫 번째 터빈가동을 시작으로 2015년에 최종 완공계획이나 신재생에너지 수요에 따라 시기 조정 예정
- 공급가능 가구 수 : 43만 가구 이상
- 전체 NSW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율 : 약 4.5%
- 개발회사 : EPURON (독일 Conergy 그룹 자회사)

※ KOTRA 자료(2009) 참조

3. 태양광 에너지

호주 시장조사기관인 Access Economics사는 현재의 추세라면 2030년에도 여전히 여타 에너지에 비해 투자비용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반면, 국제에너지협회는 지속적인 원재료 공급증가와 가속화되는 원가절감 속도를 근거로 태양광발전의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 2005~2015년에 연 5% 정도, 2016-2025년에 연 4% 정도의 원가하락이 실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제에너지협회)

한편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47%나 성장하는 등 태양광발전은 고성장 추세를 보여 온다. 2007년도에 2,826MW 설치로 전년대비 62% 성장하였으며, 독일, 스페인, 일본, 미국, 이탈리아, 한국 순으로 설치되었다. 전 세계 태양광발전 용량중 86%가 독일, 일본, 미국, 스페인에 집중된다. 현재는 경제적으로 사업성이 없어, 태양광발전의 성장을 위해서는 EU를 포함하여 40여 개국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등 정부지원이 필수적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재생에너지 특히 그 중에서도 태양광에너지가 여러 국가들의 정책적 트렌드가 되어 가고 있는데 호주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9년도에는 태양광발전에 대한 각주 정부의 지원책이 다수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는 양질의 일사량을 보유하여 태양광발전의 최적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 우드나다타(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와 노던테리토리주 경계), 제랄드톤(퍼스 북쪽 600km지역이 가장 양호하나 호주 전역이 양질의 일사량을 보유하고 있다. 호주는 대형 태양광발전소는 없고 주로 연구·데모형 및 벽지의 소규모 발전용으로 20여개의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중대형 태양광발전소 건설계획이 발표되고 있다. 호주의 태양전지 연구개발, 특히 결정형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UNSW)를 선두로 모하쉬대학 (Mohash University), 시드니공대(UTS), 커틴기술대학(Curtin University),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및 울릉공 대학 등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9년 7월 오픈을 목표로 뉴캐슬에 The Australian

Solar Institute를 설립하여 그 동안 뒤쳐진 태양전지분야 연구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으로 있다. (재생에너지기금 5억 달러 중 1억 달러 투자) 호주에서의 태양광에 의한 에너지는 상업용보다는 주로 가정용 발전과 온수공급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전국의 5개 도시에 시범적으로 Solar City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최소 5기가 용량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Solar City는 연방정부에서 5년간 7,500만 달러를 출연하여 5개의 솔라시티를 지정 운영하고, 향후 5년 안에 5MW 용량의 태양전지모듈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 지정된 솔라시티로는 애들레이드, 타운즈빌, 블랙타운(시드니), 앨리스 스프링스 등이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태양열 온수보일러의 경우 일본/미국 합작회사인 Rheem(Solahart)사의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고 기타 여러 공급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형태이다. 가정용 태양광 모듈발전 시스템 공급업체가 30여개가 넘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며, 설치는 BCSE에서 인가한 설치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태양광 온수시스템은 호주의 5개 업체에서 생산이 되어 국내공급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간 생산량 약 10만대 규모). 주요 생산업체는 Chromagen, Conergy, Dux Hot Water, Ecosmart Hot Water, Rheem 등이다.

태양열발전소의 경우 2010년 착공을 목표로 북서부 Victoria 주에 Solar Systems라는 회사가 154MW 규모의 PV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기획하고 있다. 또 호주는 2030년까지 5기가 와트의 전력을 태양열발전으로 생산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향후 구체화된 대규모 발전소 프로젝트는 하기의 Large Scale Solar Concentrator Power Plant 이다. 연구/데모용 및 벽지의 소규모 발전용으로 약 20여개의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편으로 태양광전력생산에 핵심적인 부품인 PV(태양전지)의 경우 호주유일의 생산업체인 BP Solar가 내년 3월에 시드니올림픽공원에 위치한 공장을 폐쇄할 계획으로 있어서 태양전지 제품에 대한 수입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Large scale Solar Concentrator Power Plant) 건설 프로젝트

- 주관회사 : Solar Systems Pty Ltd.
- 발전소위치 : 83 Lime Avenue, Mildura, Victoria
- 총 발전규모 : 154MW
- 총 공사규모 : A\$420백만 (A\$295백만: 민자, A\$125백만: 연방 및 주정부 지원)
- 발전방식 : Solar Systems 이 자체 개발한 태양집열판인 Heliostat Concentrator Photovoltaic(HCPV)셀을 사용하여 위성안테나 접시와 같은 태양전지가 집열을 하여 발전하는 방식(HCPV는 기존 솔라 셀보다 3배 이상의 집열 효과 보유)
- 입찰계획 : 2009년 후반에 공개 입찰 예정
- 주관사인 Solar Systems는 HCPV를 멜버른에서 직접 생산 및 수출할 계획

※ KOTRA 자료(2009) 참조

□ 풍력발전 프로젝트 진행절차

- 풍력발전지역(Wind Farm)에 필요한 부지 매입 또는 장기 임차
- 관련 주정부 및 연방정부 인허가
- 풍력발전 완공 후, 생산전기를 공급할 판매처 선정 (Energy

Australia 등 전력 도매업자, 소매업자)

- 풍력발전 사업자로 우리기업이 단독 또는 호주기업과 합작투자 진출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맥과리 은행이 공동 사업자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 풍력발전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자(Sub-Contractor)로서 프로젝트 일부 시공에 참여하거나 부분품 납품이 가능하다.
- 풍력발전 사업자는 크게 호주기업과 외국계 호주진출기업이 있으며, 외국계의 경우 다수가 본사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 KOTRA 자료(2009) 참조

※ 태양열 발전소21)

Anangu Pitjantjatjara Solar Station. 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 량 : 200 Kw - 공사금액 : \$ 2.5백만 - 남부호주 북서쪽 원주민구역에 시범설치
Hermannsburg. Yuendumu & Lajamanu Power Station. 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 량 : 720 Kw (3개지역에 나누어서 설치) - 총 공사비 : \$ 700만 - 발주, 공사, 운영 : Solar System
CSIRO Energy Centre, Newcastle, NS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 량 : 실험용으로 90Kw-PV Cell, 60Kw-Pacific Solar, 120Kw-Tyco two Capstone natural Microturbines 3종의 설비 - 총 공사비 : \$ 34백만 달러, CSIRO에서 운영
Large Scale Solar Concentrator Power Plant. V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계획 : 2010년 착공하여 2013년 완공 - 주관회사 : Solar System Pty Ltd - 발전소위치 : 83 Lime Avenue, Mldura, Victoria - 총 공사규모 : A\$ 420백만달러 (A\$ 295백만 : 민자, A\$ 125백만 : 연방 및 주정부 지원) - 총 발전규모 : 154K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량 : 27만 MWh/년 (45,000가구 1년 전력사용량과 동일한 규모) - 발전방식 : Solar Systems가 자체 개발한 태양집열판인 Heliostat Concentrator Photovoltaic (HCPV) 셀을 사용하여, 위성안테나접시와 같은 태양전지가 집열을 하여 발전하는 방식. HCPV는 기존 솔라셀보다 3배 이상의 집열효과가 있다고 함 - 주관업체인 Solar System에서는 HCPV를 멜버른에서 직접 생산하고 생산설비를 수출도 할 계획
--	--

한편으로, 과거에는 독립형 (Off Grid)이 주류였으나 최근에는 계통연계형 (Grid Connected)이 크게 확대되었다. 독립형은 벽지의 신호등 및 가로등이나 펌프가동용, 농업용으로 주로 설치한다. 벽지의 경우 태양광발전과 디젤발전기 혹은 이에 더하여 소규모 풍력 타워를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형의 설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지원하고 보조하는 제도로 설치보조금제도가 있다. 즉, 설치보조금제도로 가정용 주택지붕을 중심으로 한 계통연계형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계통연계형이 약 52% 차지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차원은 아니나 최근 각 주차원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를 시행중(SA, QLD, ACT)이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대부분 자체적으로 소비하고 남는 여유분(Net)에 대해 보조하고 있어 실효성이 높지는 않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주로 디젤발전기로 전기를 충당하는 벽지에서 재생에너지발전으로 변경할 경우 시설비를 50%까지 연방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연방정부지원금에 추가로 설치비를 지원하여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1) KOTRA 자료(2009) 참조

※ 우리나라의 진출방안

□ 태양광발전관련 진출 가능분야

- 직접 태양광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진출 (현재로서는 현실성 결여)
- 태양전지 생산설비 수출 또는 현지 생산 (합작투자) 진출
- 태양전지 생산업체에 폴리실리콘 수출
- 태양광 모듈 수출

□ 태양전지 생산설비 수출 또는 현지 생산(합작투자) 진출

- 호주에는 태양전지생산기업이 1개 있을 뿐이나, 향후 증가될 예정이므로 이들 기업에 수출 또는 합작생산의 형태로 생산설비 납품이 가능하다.
- 다만, 아직 우리기업이 합당한 제조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결정형 설비보다는 LCD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경쟁력이 있는 박막형 설비납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SILEX Systems Limited (NSW)

- 호주유일의 PV전지 및 모듈 공급업체였던 BP Solar가 09. 3월 전지 및 모듈 생산 공장을 폐쇄하자 이를 인수한 회사이며, 기존 BP의 생산시설을 재정비하고 올 7월부터 재가동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다.
- 15년까지 200MW규모로 생산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 BP Solar는 이전에 년 50MW의 태양전지 및 10MW의 모듈을 생산하고 있다.

□ Spark Solar (ACT)

- 캔버라에 위치한 호주의 두 번째 태양전지 생산업체가 될 예정이다.
- 10. 2분기 생산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나, 약간의 자금난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 1차로는 독일 장비설치 계획이나 설비증설시 한국장비 설치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모듈생산업체가 동사의 태양전지를 수입하여 모듈을 만들고 생산된 모듈을 호주시장에 공급하는 방안도 협의 중에 있다.
- 기타 Regency, Tinamou 등도 태양전지 생산을 위해 한국설비 도입 검토 중에 있다.

□ 태양광 모듈 수출

- 호주에서 급증하고 있는 태양광모듈 수입품의 80%는 중국산(5,900만불) 및 일본산(3,600만불)이 점유하고 있고, 한국은 08년에 최초로 64만불 수출하였다.
- 호주의 태양광모듈 수입규모는 06년 US\$ 21백만, 07년 US\$ 47백만, 08년 US\$ 120백만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 중국, 일본기업들은 다양한 종류의 제품군으로 현지 수요 충족. 특히, 중국의 경우 호주와 연구개발 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태양광 모듈판매에 있어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 태양광 모듈은 호주 국내의 태양광모듈 생산기업이 직접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 판매하거나, 설치 및 유통업체가 해외에서 직접 소싱해오는 방식으로 유통된다.

□ 우리의 수출확대방안

- 호주는 솔라팜(Solar Farm, 상업용 대규모 태양광발전소)이 현재 전무하나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향후 솔라팜 건설시 한국 제품 납품을 추진하고 있다.
- 호주의 태양광모듈은 대부분 가정용으로 다양한 모듈사이즈를 요구하나 한국제품은 주로 태양광발전소용으로 규격이 많지 않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제품군 확보가 필요하다.
- 대부분의 수입업체가 한국제품의 가격이 높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가격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 최저 수입가격이 US\$2/W 미만인데 반해, 한국제품은 US\$ 2/W 후 반대라고 할 수 있다.
- 현재 우리 업계는 태양전지를 독일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향후

에는 호주의 태양전지를 수입하여 모듈을 만들고 생산된 모듈을 호주시장에 공급하는 식으로 호주 태양전지업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호주는 현재 결정형 태양광모듈이 주류이고 박막형은 거의 전무하므로, 박막형 태양광모듈업체는 호주의 박막형 틈새시장 개척 여지가 있다.
- 결정형에 비해 발전효율이 떨어져 설치면적이 많이 필요한 박막형은 도시지역의 가정용 솔라패널로는 다소 부적합하지만, 섭씨 40도 이상에서는 결정형보다 발전효율 감소가 적은 장점이 있으므로 적합지역인 부지가 싸고 고온사막형 기후인 아웃백지역의 집중 개척을 권장하고 있다.

※ KOTRA 자료(2009) 참조

VI. 호주의 투자유치 및 투자산업 현황

1. 호주의 투자 환경

호주는 투자를 장려하는 국가로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리스크도 매우 낮은 편이다. 특히,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있어서,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의 투자에 대해서 장애가 되는 문제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5년을 시점으로 하여서는 외국으로부터의 투자액이 약 11,071억 호주 달러였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는 10년간에 큰 개혁이 이루어져 법인세는 30%로 조정되어서,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에 필적하는 수준이 되었다. 교육을 받은 노동인구가 대부분, 특히 광물 산업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가지는 사람이 많은 편으로 알려졌다. 즉, 호주는 에너지광물 산업분야의 전문가를 세계에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나라이다. 에너지광물업계는 과거 25년간 심각하거나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파업과 같은 장애도 별

로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산업계의 대부분이 철저하게 합리적인 계약관계로 이루어진 점을 들 수 있다.

연방 정부의 해외투자촉진청(Invest Australia)은, 대 호주의 외자촉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관청으로서, 호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외국 투자 감독기관(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의 허가가 필요로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절차나 내용면에 있어서 상당 수준으로 완화되어 있다.²²⁾

2. 호주의 투자유치정책 전반

호주정부는 경제활동 및 고용기회의 확대, 신기술, 경영기술 및 해외시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국익에 반하지 않는 한 외국인투자를 환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규모가 작은 제안은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규모가 큰 제안도 국익에 반하지 않는 한 승인된다.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FIRB)는 관련 당사자와 기타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검토 의견을 종합해 규모가 크거나 혹은 좀 더 민감한 외국인투자 제안이 국익에 반하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현재까지 건수에 있어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외국인투자 제한은 부동산 구입이었다. 정부는 주거용 택지 또는 신축 중인 주택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투기적 요소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의 외국인 투자정책도 신규 주택공급을 늘리는 주택부문에서의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부동산 부문 이외에는 지역 총괄본부(RHQ)의 유치나 연구 개발(R&D) 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있다.²³⁾

3. 투자 규제 현황

22) 이하의 내용은 <http://www.economist.com/countries/australia> 참조

23) 이하에서는 <http://firb.gov.au/> 참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면, 라디오, TV 방송, 일간 신문, 민간 항공 산업은 규제업종이다. 기타 외자 가이드라인이 지정된 중요 분야에 대해서는 외자 비율의 상한이 정해져 있다. A\$ 5,000만 이상인 기존 호주기업의 인수나 외국인 1인이 15% 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다수 외국인의 지분 합계가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A\$ 1,000만 이상이 소요되는 새로운 기업의 설립 및 미디어에 5% 이상 투자하거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비 포트폴리오 투자, A\$ 5,000만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기존 호주기업의 인수 혹은 50% 이상의 주식 취득, 규모와 관계없이 외국정부 혹은 정부기관에 의한 직접투자도 사전 승인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호주로, 혹은 호주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외화 및 호주달러의 송금에는 제한이 없다. 호주 내에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호주달러를 사고 팔 수 있다. 외화의 경우 RBA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관을 통해 매매가 가능하다. A\$ 1만 이상의 거래 및 환전은 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er에 보고해야 한다.

4. 투자 관련 법규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한 법규는 다음의 법률규정이 총괄하여 규제한다.

- ① The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
- ② The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Regulations 1989
- ③ Foreign Takeovers (Notices) Regulations

한편, 투자 관련 법규는 아니지만 현지 상법상 투자자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음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호주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통상 유한회사(proprietary Company) 형태로 현지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이때 등록조건으로 최소 1인의 대표

이사(director)를 신고하여야 하며 대표 이사 중 최소 1인은 반드시 현지 거주자(Australian resident)일 것이 요구된다. (Corporations Act 2001) Australian resident 는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의미하는데 이 같은 조건으로 인해 초기 법인 설립 시 반드시 현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파트너로 선임하여 진행해야 하며 이로 인해 인력 채용, 급여 부담, 정보 유출 위험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본사의 개설 요원 1명과 현지에서 채용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1인이 공동 대표이사로 등록하게 된다. (proprietary Company 는 주주의 수가 50명 이하인 비 상장기업을 의미하며 통상 Pty. Ltd 로 표시함. 상대되는 개념은 상장기업(Public Company) 로 통상 Ltd. 로 표시함)

5. 투자 인센티브

(1) 연방정부 투자 인센티브

연방정부 차원의 투자 인센티브는 “외국인 투자 지원”이 아닌 “기업 투자 지원”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 특화된 인센티브의 예는 찾기 어렵다. 최근 노동당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혁신, 산업, 과학, 연구부 산하 투자유치청인 Invest Australia 가 혁신, 산업, 과학, 연구부 내부로 흡수되었다. 현재 투자 유치 기능이 외교부로 이동하고 있으며 AUSTRADE에서 이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새로운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윤곽은 올 하반기에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연방정부 주요 투자 인센티브²⁴⁾

R&D Tax Concession sche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Tax Concession - A\$20,000 이상 R&D 비용에 대해 125%의 법인 소득 공제 허용 - 외부 R&D 기관 외주도 허용되며 등록된 기관에 외주를 줄 경우 A\$20,000 한도 제한 없이 전액이
---------------------------------	---

	<p>소득 공제 대상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mium R&D Tax Conce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 실적에 비해 R&D 투자를 대폭 확대한 기업에 대해 소득 공제율을 175%로 상향 적용 ○ R&D Tax Offs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매출 A\$500 만 미만으로 R&D 에 A\$2 만~100 만 달러를 투자한 중소기업은 위 소득공제액의 30%에 해당하는 세액 환급(rebate)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음
<p>Early Stage Venture Capital Limited Partnerships (ESVCL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VCLP 프로그램에 등록된 투자 펀드로부터의 자금 지원 등에 대해 비과세 ○ 등록 펀드의 규모는 A\$1 억 이상이어야 하며 하나의 기업에 대해 펀드 전체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지원할 수 없음 ○ 수혜 기업은 자산 규모가 A\$5 천만 미만이어야 하며 수혜기업의 자산 규모가 A\$2 억 5,000 만을 초과하면 투자 펀드는 투자액을 회수해야 함
<p>Commercialising Emerging Technologies (COME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상용화 지원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적 기술의 초기 상용화를 위해 지출된 지원 대상비용에 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전체 비용의 80%(최대 A\$64,000) . 2단계 : 전체 비용의 50%(최대 A\$56,000) 지원
<p>Innovation Investment Fund(IIF)</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의 정부-민간 공동 펀드를 조성, 민간이 펀드를 운영하여 투자 수익을 신규 중소 기술기업에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Cleantech Australia Fund 는 수익을 재생 에너지 등 청정 기술 보유 기업에 투자함 ○ 각각의 펀드 규모는 A\$3,000 만~5,000 만으로 민간 출자는 정부 출자의 200% 한도여야 함

<p>Pre-Seed Fund Programme(PSFP)</p>	<p>○ 대학 또는 정부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을 설립할 경우 최대 A\$100 만까지 Fund 에서 투자</p>
<p>Enhanced Project Byelaws Scheme (EPBS)</p>	<p>○ 광업, 식품가공업, 식품포장업, 농업, 제조업, 가스, 전기, 상수 공급 관련 신규 프로젝트(A\$1,000 만 이상) 등을 위한 자본재 수입시 해당 수입 품목이 기술 면에서 호주산에 비해 우수할 경우 관세 환급 실시</p>

(2) 주정부 투자 인센티브

주정부 역시 외국 기업뿐 아니라 다른 주로부터의 투자(inter-state investment)까지 포함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단, 조세 혜택이나 보조금 지급 등 재정상의 지원은 주정부 차원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초기 정착 시 정보 제공 및 행정적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주 내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의 상용화라던가 초기 창업 지원 등에 투자 지원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3) 조세 감면 제도

연방정부 차원의 산업 지원제(예; 섬유산업, 자동차 산업)가 있으나 이는 기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여 투자유치책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조세상의 인센티브는 위에서 언급한 R&D Tax Concession이 거의 유일한 제도이나 동 제도는 고도기술 투자 관련 혜택은 아니며 R&D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특정 지역 내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도 운영되지 않는데 연방 국가인 호주의 특성상 특정 지역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는 주정부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하나 현 세제상 주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은 극히 제한적이

24) KOTRA 자료(2009) 참조

라는 것이 특정 지역 관련 조세 인센티브가 운영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기타 현금지원 및 재정 지원도 별도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6. 현지 법인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의 경우 해외 피투자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고 난 후의 금액을 본사로 송금하는 것으로서 세후 소득이다. 이는 외국 피투자회사가 낸 세금이기 때문에 한국의 투자기업입장에서는 간접 납부한 세금으로 볼 수 있다.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조세조약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100% 공제가 가능하고, 조세조약이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불가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50% 공제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주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도 조세 조약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특법에 따라 50%만 공제가 된다.

○ 예 : 한국계 호주회사가 100원을 벌어서 30원을 호주 국세청에 납부하면 70원의 소득이 생겨서 이를 전부 한국본사로 송금하였을 경우 한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함.

-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해외에서 납부한 30원 중 15원(50%)만 공제됨.
- 한국의 과세소득 70원(배당소득) + 15원(납부세액의 50%)= 85원
- 세율 : 호주와 동일 30%
- 산출세액 : 22.5원
- 간접외국납부세액 : 15원
- 추가납부세액 : 7.5원

상기한 바와 같은 예 때문에, 현지 진출 법인들은 이 같은 문제로

본사 송금보다 현지 재투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7. 자원개발 정부정책 방향

호주 정부는 민간기업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전략적인 에너지 세일즈 외교를 전개하여 에너지자원의 해외 수출시장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해외 수출시장 확대를 위하여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ASEAN, 미국 등 아태지역 국가 등과의 FTA를 적극 추진 중이고, 한국 등 9개의 에너지 자원 수요국과 양자 간 정기적인 자원 협력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호주의 에너지자원 개발 프로젝트는 자원수입국에 합작투자 등을 통한 안정적 자원 확보 기회를 제공한다. 호주 내 추진 중(A\$ 110억)이거나 개발 검토 중(A\$ 388억)인 석탄, 원유, 가스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개발 프로젝트(43개)는 국제 에너지 공급 부족 및 가격 급등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공급선 확보가 시급한 한국 등 자원 수입국에 합작투자 등의 형태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원 확보 기회를 제공한다.

2007년 4월 호주 농업·자원경제국(ABARE;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은 광업부문에서 총 217건에 이르는 신규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총 투자 규모는 A\$ 962억~1,011억이며 투자계획 건수로는 역청탄에 대한 투자계획이 총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투자액으로는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액이 A\$296억~336억으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광종별 프로젝트 추진 현황

(단위 : A\$)

제 2 장 호주의 국가현황 및 에너지 정책과 법제 현황

광 종	투자계획건수	투자규모	비 고
역청탄	37건	9,268.5~9,768.5	9건/3,789
석탄층메탄	5건	421	4건/386
석유, 천연가스	29건	29,626~33,626	12건/9,226
우라늄	11건	1,037.60	3건/82.6
보크사이트	1건	700	0건/0
동	14건	8,264.30	5건/1,172
금	30건	4,807.4~4,832.4	9건/2,556
철광석	29건	28,137	9건/12,260
납, 아연, 은	17건	1,639	9건/779
미네랄샌드	16건	1,035.6~1,291.6	4건/179.6
니켈	21건	10,264~10,349	4건/2,412
희토	2건	246	1건/96
주석	2건	78	0건/0
바나듐	3건	721	1건/175
합계	217건	96,245.4~101,111.4	70건/33,843

※ KOTRA 자료 (2009) 참조

8. 민간 및 외국인 투자 동향

UNCTAD가 발표한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투자 선호도를 조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는 2007~2009년 FDI 10대 선호 대상국 안에 포함될 정도로 투자환경이 안정적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새로운 투자대상으로서 기피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결과

가 나온 것은 호주의 광물 및 에너지자원에 대한 이용 가능성이 높이 평가되기 때문이다. 2006년 말 기준 호주에 유입된 FDI 중 광물산업 부문의 지분이 전체의 24.4% 로 가장 높다. 2007년 11월 한국 산업자원부와 호주는 골드코스트에서 제23차 한호 자원협력 위원회를 개최하여 유연탄, 동·아연, 우라늄 등 호주 광물자원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진출 확대하였고, 호주 LNG(천역액화가스)의 한국 도입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및 한국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유연탄 공급 및 투자 확대 지원에 합의 인근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외국인 자원개발 투자동향 일반

- 2005년 기준 광업부문 대호주 외국인 투자는 A\$7,615백만으로 전 업종 중 최대 비중을 보였음. 또한 2005년 대호주 외국인 투자 누계액은 A\$281,121백만이며 광업이 21.1%로 역시 비중 최대
- 일본과 중국의 대호 자원개발 투자동향
 - 일본의 경우 오랜 호주 진출 역사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호주 자원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국, 경제발전을 위해 자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호주 자원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음.
 - 중국은 현재 진행 중인 중·호주 FTA를 통해 호주산 자원 확보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일본이 2006년 말 호주와의 FTA 협상을 시작한 것도 호주 시장에서의 중국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포함됨.
 - 특히 중국은 지난 2005/06 회계연도 기간 무려 A\$67억5,800백만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을 호주 광업부문에 투자함. 또한 중국 바오스틸(Baosteel)과 호주 폴세스큐(Fortescue Metals Group) 간에 연간 2천만 톤 규모의 철광석 장기 공급계약, 호주 원스틸(Onesteel)과 중국 상시하이신(Shanxi Haixin Iron & Steel)과 헤베이진시(Hebei Jinxi Iron & Steel) 간 총 1천2백만 톤 규모의 10년 장기계약 체결 등 호주 광물자원에 대한 직접 진출 및 장기계약

을 통한 광물 수급확보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호주의 대표적인 해외자원개발과 투자사례는 동티모르 해유전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호주와 동티모르 간 에너지자원 공동개발협정은 1999년 동티모르 독립을 전후한 세 차례의 조약체결을 통해 완성되었다. 1989년 호주와 인도네시아 간 “티모르 갭 조약(Timor Gap Treaty)”, 동티모르가 독립 직후 2002년 호주와 체결한 “티모르 해 조약(Timor Sea Treaty)”, 2006년 호주와 동티모르 간 “티모르 해 특정해양조정조약(The Treaty on Certain Maritime Arrangements in the Timor SEA)” 등 일련의 조약체결을 통해 두 나라 모두 명분과 실익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Greater Sunrise 유전의 본격적인 개발과 공동개발구역 밖의 해상유전에 대한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불평등조약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에서도 벗어나게 되었다. 동티모르는 유전에서 40억불에 이르는 개발수익을 확보하게 되어 국가발전의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게 되었다. 호주와 동티모르가 마주보고 있는 티모르 해협 남쪽에 위치한 동 유전에는 48억 배럴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지역에는 Corallina/Laminraia, Bayu-Undan, Greater Sunrise 유전 등이 분포되어 있으며, 유엔해양법협약의 등거리 기준에 따를 경우 유전의 68%가 호주보다 동티모르에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티모르가 티모르해 유전에서 벌어들인 수익(2000~2004)은 총3억5,900만 불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²⁵⁾

※ 공동개발협정의 주요 내용 비교²⁶⁾

25) 김경신, 호주-동티모르 분쟁해역 에너지자원 공동개발모델과 시사점, 해양수산현안분석, 2008-2호 (2008.2) 참조

26) 김경신, 호주동티모르해양에너지자원공동개발협정의 평가와 정책 시사점, 월간 해양수산 통권 제281호 (2008.2) 참조

구 분	티모르 갭 조약	티모르 해 조약	티모르 해 특정해양조정조약
당사국	인도네시아-호주	동티모르-호주	동티모르-호주
체 결 (발효)	1989(1991)년	2002(2003)년	2006(2007)년
특 징	- 3개의 지역으로 구분 - 별도의 효과 부여	- 공동석유개발구역 설정 - 중첩수역 수익배분	- 중첩수역 수익비 율 조정 - 티모르 해 해양관 할권 등 권리 유보
유 전 수익 지분	- 자국관할 : 자국 90%, 상대국 10% - 공동관할 : 각 50%	- 공동석유개발구역 : 호주 10%, 동티모르 90% - 중첩수역 : 호주 81.9%, 동티모르 18.1%	- 중첩수역 : 각 50%

9. 자원 개발 분야에 투자 진출

우리나라의 대 호주 투자는 광산 개발 등 자원 개발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이 밖에 종합 상사의 현지법인 설립이나 골프장 매입 등 레저 산업 분야에서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영업 이민자들의 투자는 소액 투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2006년 대 호주 투자는 신고/신규 법인 기준 49건, US\$ 1억 9,000만 으로 2000년 이후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신고 기준 투자 금액(누계)의 75%를 광업 부문이 차지했고, 2001년 이후 도소매업(종합 상사의 현지 법인 설립 등)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다시 광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다.

2007년 대호 투자의 총 신고건수는 117건이며 신규 법인 수 54개로 가장 활발하였으나 건당 투자 금액은 2006년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이는 소규모 자영업 투자가 신고 투자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을 의미한다.²⁷⁾

※ 한국의 대 호주 주요 업종별 투자 동향

(단위 : US\$백만, 건)

연 도	광 업		도소매업		제조업		농림수산업		부동산업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92	2,804	220	468	183	199	50	104	90	98
68~80	1	1	6	2						
81~90	20	685	17	10	14	5	11	14	1	
91~00	104	1,254	84	215	76	76	15	25	9	18
2001	1	1	5	4	11	4	0		4	0
2002	4	11	8	32	4	1	3	8	1	1
2003	5	124	19	44	6	2	3	5		
2004	2	13	9	36	15	5	8	9	6	7
2005	8	38	15	55	13	4	0		8	11
2006	6	46	21	51	8	38	4	12	11	15
2007	12	62	22	9	17	21	4	10	29	39
2008	29	570	14	10	19	42	2	0	21	8

27) KOTRA, 자원개발진출 가이드 - 호주 (2008.8) 참조

제 3 장 호주의 에너지개발법제의 규제체계 및 내용

제 1 절 에너지자원 개발에 관한 일반적 개요

I. 에너지광물 산업의 인프라

호주에서는 에너지광물산업의 인프라가 매우 발달되어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발달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즉, 정보 통신이나 운송망 등에 관한 인프라는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매우 잘 발달되어 있지만, 도시로부터 떨어진 지역에서는 도시지역만큼은 발달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의 시장은 과거로부터 독점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었던 일부 기업들이 휴대전화의 제공을 주로 하고 있었는데,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이나 원격지에서는 그 서비스가 부족하여, 내륙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광산에서는 전화 통신이 위성에 의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도로, 철도, 항구 등의 설비는 도시지역에서 잘 발달되어 있지만, 인구밀도가 적은 지역, 특히 가장 북쪽지역에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평가된다.

철도망은 경우는 대륙의 동쪽에서 시작되어 기존의 광산 지역까지 철도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고, 그 외 지역의 수송에는 트럭이 주로 사용된다. 항구설비는 현재의 수요에 대하여 일정수준까지 대응하고 있지만, 광물수출이 활발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여유까지는 대응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부족한 운영설비에 관하여는 상업적 철도망을 임대함으로써 보충하고 있다. 상업적 철도망은 일부가 민간 소유이지만, 일부 정부의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한편으로 호주에서는 광업분야를 전문으로 한 교육이나 훈련, 컨설팅 서비스, 컴퓨터 소프트, 법률, 파이낸스, 회계 서비스 등의 인

프라가 매우 잘 발달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전문적 분야에서의 구인수요가 높기 때문에 인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호주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광물탐사 및 채굴에 관한 자금을 모으기가 용이한 것으로 평가된다. 호주 정부는 우라늄과 같은 일정한 광물을 제외하고는 정부차원에 이러한 광업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호주에서는 대부분의 주민이 광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농업 분야가 쇠퇴한 지방에서는 광업이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인들은 적절한 급여 수준이 보장되어 금전적 유인만 있으면, 원격지의 광산에서도 일을 한다는 의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광업 분야에서의 급여 수준이 일반적으로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II. 에너지개발 법제와 관련된 산업계의 구성 (Industry Structure)

호주에서는 다른 산업과 같이 광물자원 탐사와 에너지자원 광산개발 기업도 산업의 특성에 맞추어 발전해 왔지만, 각각의 역할과 분야에 있어서 최적화된 기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산업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별 구조는 항상 통일적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을 분류할 수 있다.

- Initiators (안건 개시자)
- Junior (소규모 탐사 기업)
- 소규모의 광산 생산·탐사 기업
- 중규모의 광산 생산·탐사 기업
- 대기업

1. Initiators

초기의 탐사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개시하는 프로모터로서, 대규모 광업기업은 탐사 사업을 독자로 실시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기업 외의 프로모터가 활약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 또는 신디케이트의 구성원, 주니어 기업의 간부는 이러한 프로모터로서 유망 탐사 광구를 발견하여 사업화의 가능성에 관한 초기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2. 주니어 탐사 기업 (Junior Explorer)

주니어 탐사 기업은, 전형적으로 호주 증권거래소(ASX)에 상장하여, 보통 5백만 호주 달러 정도의 자본금을 조달하고, 호주 내외에 있는 복수의 탐사 광구를 소유하고 있다. 소유 광구의 일부는 아프리카, 아시아 등 호주의 국외일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기업은 Joint Venture 파트너나 투자가로부터의 자금을 모으기 전에, 간단한 현지조사 등에 의하여 초기 탐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니어는 독자적으로 광업 기업으로 성장하는 장기적 목표를 가지는 것과 프로젝트 개시자로서 탐사사업 국면을 지속시키려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주니어의 전략으로서 첫 번째 목표는 우량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이러한 사업가 또는 기업에 탐사광구를 매각하고, 이익을 얻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주니어가 보유하는 광구에서 보다 큰 기업이 Joint Venture에 의하여 탐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주니어의 역할은 광물탐사 및 채굴 사업의 청부자의 역할을 한다는 요소도 있지만, 사업 성공에 대한 인센티브와 프로젝트의 권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물론 주니어와 그 Joint Venture 파트너의 관계에는 다양한 패턴이 있게 된다. 주니어는 항상적이고 안정적인 캐쉬 플로우(cash flow)가 없기 때문에, 항상 탐사자금의 조달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니어의 사업 전개는 기술개발 벤처와도 유사한 점이 있어서, 사업활동 중에

서는 실질적인 수익이 없기 때문이다. 주니어의 경우, 대기업에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있는 안건을 개발함으로써만 최초의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주니어의 사업 내용은, 통상의 기업활동과는 다르지만, 불필요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다. 대기업이나 투자가는 주니어의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투자 안건의 내용을 보는 것과 동시에, 경영진의 질도 평가하게 된다. 신뢰할 수 있는 경영진이나 경영전략을 가진 주니어라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경영이 계속되어 가끔씩 추가 자본을 요구하여 증권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3. 소규모의 광산 생산·탐사 기업 (Junior Miners)

탐사 사업을 실시하는 주니어와 유사하지만, 조업 광산을 소유하여 조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금을 탐사사업에 투입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이 목표로 하는 것은 장래의 핵심사업이 되는 대규모 광산을 발견하는 것이다. 경영이 난관에 부딪혔을 경우, 조업을 그만두거나 조업 광산을 매각하고, 탐사 전문의 주니어로 복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에너지광물산업으로부터의 캐쉬 플로우(cash flow)가 단절되는 경우, 재산관리에 의하여서 관리되거나 흡수합병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렇지만, 성공한 탐사성과를 가지는 주니어의 경우, 10년 또는 20년 정도 매각 자산에 부수되는 로열티 등의 수입을 얻게 된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4. 중규모의 광산 생산·탐사 기업 (Mid-sized Miners)

기본적으로는 경영의 핵심이 되는 생산성 있는 광산을 가지는 기업이지만, 최근 몇 년간에는 호주에서 이 범주에 포함되는 기업수가 감소되고 있다는 점이 평가된다. 이것은 장기간에 걸친 경기변동과 호주에서의 외국기업에 의한 M&A 활동이 활발한 일어서, 외국 기업에

의한 호주의 중규모 기업의 매수가 하기 용이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중규모 기업의 소멸이 업계에 미친 영향은 명확하지 않지만, 외국의 광업기업은 더욱 더 글로벌인 전략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향은 호주에 대한 에너지자원의 개발과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5. 대기업 (Majors)

BHP Billiton, Rio Tinto, Anglo American 등을 포함한 소수의 국제적 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업도 글로벌 투자가로서, 사업규모의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2001년의 BHP와 남아프리카의 Billiton의 합병은 유럽의 런던 증권거래소로부터의 자본참가의 요청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기업은, 폭넓은 생활필수품 분야에서 국제적인 자산을 가지는 매우 다양화한 사업을 영유하고 있는 광업기업이다. BHP는 호주에서 탄생한 기업이지만, 현재는 국제적인 기업으로서 경영되고 있다. 경영거점을 복수의 나라에 분산하여 고수익인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이 이익을 에너지자원의 탐사와 매수에 투입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시도하고 있다.

제 2 절 호주의 에너지 법제 현황

I. 에너지 법제 운영 등에 관련된 기관

1. 연방 정부의 입법권

호주의 연방헌법에 의하여, 연방 의회에는 행정 전반에 걸친 법률의 입법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다만, 연방 의회의 입법권한은 세제, 방위, 외교, 각주간 및 대외 무역, 금융, 혼인·이혼, 이민, 기업 도산, 각주간의 노사조정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연방 의회에는 교육, 환경

문제, 형법, 도로행정 등 주요한 분야에 관한 특별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것은 이러한 분야가 연방 정부의 권한 외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에 관해서 연방 의회는 특정의 권한은 없기는 하지만, 주 정부에 의한 댐 건설이 환경 문제에 관한 국제 조약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인 경우, 연방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관여하게 된다.²⁸⁾

2. 연방선주권조정기관(National Native Title Tribunal)

연방선주권 조정 기관(NNTT)은, 연방 정부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그 근거법으로는 연방 선주권법(1993년)(Native Title Act 1993)로서 동법을 법적 근거로 하여 설립되었다. NNTT의 역할은 선주권에 관해서 일반 시민에게 공고하고, 관계자 사이의 교섭지원 이외에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선주권 신청 및 이에 관한 중재 그리고 해결과 선주민 토지 이용 합의(Indigenous Land Use Agreements : ILUA)의 중재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NNTT는 협의의 중재 또는 심판의 역할을 완수하고, 선주권과 관련된 절차의 관계자간 견해나 현안 사항을 검토한다.

3. 감독법원 (Warden's Court)

주와 준정부의 광업법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감독법원으로서 일반적으로 “Warden's Court”가 운영되고 있다. 감독법원에 소속된 광업재판관(Mining Warden)의 역할에 있어서 각주과 준정부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주요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광업법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중재하고, 이를 해결한다.
- 에너지광물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의견을 소관 부처에 제출한다.
- 광업재판관은, 소관 주무장관 및 차관으로부터 위탁되는 모든 사

28) 이하에서는 <http://www.fedcourt.gov.au/> 참조

- 항에 관하여, 조사 및 보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주와 준정부에 따라서는 광업 활동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상해, 사망 사고의 조사 등 노동 위생 안전하게 관계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감독한다.

II. 법령에 의한 자원부문 규제 현황

1. 광산 채굴권 신청 절차

호주의 광산 채굴에 대한 개발사업 인가 및 허가는 각 주(6개 : NSW, VIC, QLD, WA, SA, TAS) 및 NT(Northern Territory: 북호주 행정자치구역)의 에너지 자원부에서 각각 관할하고 있으나 내용과 적용에 있어 거의 동일하다.²⁹⁾

광물 탐사를 원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대부분 해당 주의 에너지 자원부 장관에게 사업 계획, 탐사 방법과 비용 등에 대한 제반 서류를 제출해 사전 인가(Licence)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 기업이나 단체는 정부 기관지 혹은 지역 일간지를 통해 광물 탐사 작업과 관련해 공표(public notification)할 의무가 있다.

한편, 탐사 및 발굴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발굴 지역의 지표면 파손 및 변형에 대한 비용 등 보상 비용을 해당 지대의 소유주에게 지불해야 한다. TAS주와 NT의 경우 일부 비용을 사전에 예탁시켜야 한다. 또한 6개주와 NT 모두 탐사 발굴 신청 지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NSW주와 VIC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연간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29) 이하에서는 <http://www.industry.gov.au>, <http://www.dpi.nsw.gov.au/minerals>, <http://www.doir.wa.gov.au/mineralsandpetroleum>, <http://www.pir.sa.gov.au/sector5.shtml>, <http://www.minerals.nt.gov.au>, <http://www.nrme.qld.gov.au/index.html>, <http://www.dpi.vic.gov.au>, <http://www.mrt.tas.gov.au>, 참조

6개주 모두 광물 개발 유보 라이선스(Retention Licence)를 발급하고 있다. 이 라이선스는 광물을 발견한 기업 혹은 단체로 해금 필요시 개발가치가 있을 때까지 발굴 혹은 채광(採鑛)을 유보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유보 라이선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잠재적 가치가 있는 광물이 매장돼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유보 라이선스의 인가 요건으로 공표의 의무가 있는 등 탐사 라이선스와 유사하다. 호주 전 지역에서 채광 임대권(Mining Lease)을 신청할 수 있으며 탐사 라이선스 혹은 유보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우선권이 주어진다. 퀸즐랜드 주(QLD)의 경우 채광 임대권 신청자는 적절한 사전 보유권(pre-requisite tenure)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채광 개발계획에 대한 아웃라인과 세부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주 정부 기관지를 통해 광산 개발 소식을 알리는 태스매니아(TAS)주를 제외한 호주의 전체 주에서는 광산 개발 신청시 공표의 무가 주어진다. 호주 대부분 지역에서는 채광작업이 인근 주거 지역의 100~200m(남호주의 경우 400m) 내에서 이뤄질 경우 채광 지역의 지주(地主)와 소유주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 관할 총독(Governor-in-Council)이 임대 기간을 결정하는 퀸즈랜드주 및 담당 에너지부 장관에게 결정 권한이 있는 태스 매니아주와 NT(Northern Territory)를 제외한 나머지 주의 경우 채광 임대는 최장 25년까지 가능하며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추가 요건들이 있다. 채광 임대를 위한 첫 해 비용은 서호주(WA)의 A\$ 1,200(100헥타르 기준, 신청료 포함)에서부터 퀸즐랜드 주의 A\$ 4,340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적용된다.

2. 관련 정책 및 법규

호주 자원정책 관련 법규는 각 주의 개별 관할 사안으로서 해당 주의 관련 법규를 1차적으로 적용하나 호주 연방법과의 충돌 발생시 연방법이 우선 적용된다. 호주 채광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호주(WA: Western Australia) 주의 관련 법규들이 호주의 자원정책 관련 법규로서 좋은 예시가 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법이 적용되고 있다.³⁰⁾

(1) Mining Act 1978

우선적으로 Mining Act 1978은 광물탐사 단계부터 채굴에 이르기까지 라이선스 발급 등 WA의 역내 채광 작업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관할하고 감독하는 법이다. 채광 업체가 본 법을 위반할 시, WA의 주 정부는 라이선스를 취소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본 법과 관련하여 주 정부와 채광 업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시에는 주 총독 관할 법정(Warden's Court)에 분쟁 조정이 위탁된다.

(2)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은 WA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역내 채광 작업이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판단될 시에는 채광 작업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Land Administration Act 1997

Mining Act 1978에 의하면 1899년 이전 자유롭게 취득된 광물 자원을 제외하고 WA역내 모든 광산 및 광물자원은 호주 연방정부(혹은

30) 이하에서는 Australia Energy Policy, Laws and Regulation Handbook (World Law Business Library), International business publications, USA, August 8, 2008 (이하, Laws and Regulation Handbook) 및 KOTRA, 자원개발진출 가이드 - 호주 (2008.8) 참조

호주의 현 군주인 영국 여왕 : the Crown)에 귀속되어 있는데, 채광 작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채광 지역에 대한 임대권을 연방정부로부터 사전 승인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Native Title Act (NTA) 1993

1992 년 호주 연방 최고법원인 HCA(Hight Court of Australia)의 결정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원주민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 및 보호할 목적으로 원주민 소유의 토지 거래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채광 희망 지역이 원주민 소유의 토지일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상거래 능력이 부족한 원주민들이 토지 거래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호주 연방 정부차원에서 마련한 법규이다.

(5) Offshore Minerals Act 1994

호주는 역외(offshore) 자원에 대한 연방정부의 관리 감독을 규정하는 법으로서 Offshore Minerals Act 1994가 있다. 동법은 1994년 연방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으로 호주의 연해 대륙붕에 매장된 석유 자원을 제외한 기선(baseline) 3 해리 이상의 영해(領海) 해저 수역에 매장된 모든 광물 자원과 관련해 탐사, 발굴, 그리고 생산에 대한 전반적인 법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본 법은 호주 연방정부와 각 주 정부들의 공조 아래 제정된 법으로서 지정위원회(Designated Authority)와 합동위원회(Joint Authority)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 지정위원회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 인력으로 구성된 실무기구로서 본 법과 관련된 실무를 집행하는 반면 합동위원회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광물 및 에너지산업 담당 장관들로 구성된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구로서 본 법과 관련된 각종 중요 사안들을 의결한다. 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연방정부와 주 정부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 장관에게 우선적인 결정권이 있다.

한편, 역외광물자원보호법에 의하면 광물자원은 해안 기선 3해리 이상의 영해 해저수역에 매장된 각종 형태의 모래, 자갈, 점토, 석회암, 암석, 증발암(evaporites), 이판암(shale), 그리고 석탄 등 모든 종류의 해저 광물로 정의되어 있음. 석유(petroleum)의 경우 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Petroleum (Submerged Lands) Act 1967 (PSLA, 석유 및 침수지 보호법)에 의해 별도로 관리된다. 결국, 동법의 주요 관할사항은 탐사, 유보(retention), 채광, 그리고 작업 라이선스 발행이라고 볼 수 있다.

3. 환경 관련 규제

국가 경제의 약 70%(GDP 대비 산업별 비중)가 관광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호주에서 환경보호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은 물론 국가 경제와 직결되는 중요 사안이다. 호주 정부의 환경 정책은 채광과 원전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에 대한 감정(assessment)과 방지 그리고 훼손된 지역의 환경 재활 프로그램을 관할하고 있다. 각 주의 주정부들은 연방정부와의 공조 아래 호주 관광 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주의 각 주(state) 및 행정자치구역(territory) 정부들은 역내는 물론이고 해안 기선(baseline)으로부터 3해리까지의 해수역에 있어 광물 자원 관리 및 환경 보호에 대한 우선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환경 파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호주 연방정부의 대표적인 법규로 다음과 같은 법이 있다.

- ① 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
- ② Petroleum (Submerged Lands) Act 1967

4. 세제상 규제

호주에는 현재 자원산업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통일된 세제는 없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일반 세제 법규(Government taxation legislation)

및 각 주별 광산업 관련 세제(State mining taxation)를 혼합 운용해 광물 및 에너지 산업을 규제하고 있다. 호주의 광산업 및 석유 산업 관련 법인세는 일반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30%의 법인세율(corporate rate)이 일괄 적용되고 있다. 고용주에게는 일반업체와 마찬가지로 지급급여세 (Payroll tax, 4.75~6.85%), 자본 이득세(Capital Gains Tax : CGT, 변동세율 적용) 그리고 부가 급부세(Fringe Benefits Tax: FBT, 약 48.5%)가 부과된다. 아울러 호주 내 수입되는 전체 상품에 대해 10%의 부가세(Goods & Services Tax : GST)가 일괄적으로 징수된다.

채광 지역, 유전 그리고 광물 수송 장비의 개발 및 운용에 대한 비용은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채광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한 제반 활동(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EPA) 비용도 공제 대상이다.

호주는 거주 국가와 수출 국가의 국제적인 이중 과세(double taxation)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질랜드·멕시코·캐나다·말레이시아 등 다수의 국가들과 이중 과세방지 협약을 맺고 있다.

호주 정부는 또한 이중 과세방지협약을 바탕으로 해 타 국가 거주 사업자들이 호주 내 취득한 배당 이익(약 15%의 상한선), 이자(약 10%의 상한선) 그리고 지불로열티 (약10%)에 대해 과세 상한선을 규정해 지나친 과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한편, 호주정부는 광산업 및 에너지자원개발과 관련된 연료 사용 (Off-road component of energy grants)에 대한 세제혜택(Fuel Excise Credits)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세제개혁을 추진 중이다(2006 년 7월 개시 예정). 이의 결과로 향후 동 산업 개발에 사용되는 연료의 경우 일반 연료 소비세 기준 50%의 할인율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물 자원 발굴 및 생산을 위한 로열티(royalty)는 주 정부에 의해 징수되고 있으며, 2000~2001 년 기준 호주의 총 광산물 생산 이익금의 약 3.5%에 해당하는 로열티가 징수됐다. (호주 총 GDP의 5.3%)

해안 기선 3해리 이내 수역에 매장된 광물 자원에 대한 로열티는 해당 주 정부가 단독으로 관리하는 반면, 3해리 이상의 역외 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 관련 로열티는 Offshore Minerals Act 1994의 적용을 받게 되는 바, 통상 석유자원을 제외한 역외 광물 자원에 대한 로열티는 해당 주 정부가 60%, 그리고 연방 정부가 40%를 수취한다.

현재 역외 광물 자원 탐사 및 개발에 대한 통일된 로열티 시스템이 없으며 단지 Offshore Minerals (Royalty) Act 1981을 기초로 연방정부 담당 장관 및 주정부 담당 장관들로 구성된 합동운영위원회(Joint Authority)를 설치해 석유 자원을 제외한 모든 광물 자원들에 대한 로열티 유형과 과세율을 결정하고 있다.

3해리 이내 주 정부 단독 관할 수역의 광물 자원에 대한 로열티는 해당 주 정부에 의해 적절하게 입법이 될 때까지는 역내(Onshore) 광물 자원 로열티 시스템에 준해 로열티의 유형과 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제 3 절 에너지 자원개발 규제에 관한 기본 법제

I. 호주에 있어서의 광업법 (Mining Law)

호주에 있어서 광물자원의 소유권은 국민을 대리하여 연방 정부 및 주정부와 준정부의 정부에 귀속된다. 광물탐사 및 채굴권과 채굴권은 일반 지역사회의 대리인으로서 주 및 준정부의 정부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허가된다. 각각의 정부가 운용하는 절차나 용어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호주 전국을 통하여, 환경보호·보전 및 개발 목적 등의 필요 요건에 대한 요구 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다.

광물자원의 관리, 개발권, 리스 등은 각주 및 준정부 정부 기관의 소관 사항이다. 각 주 및 준정부의 정부는, 각주의 광업법 및 관련 행정 시스템의 개요를 정리한 가이드북을 발행하고 있다. 각 주에서는 각각

의 광업법이 제정되어 탐사권의 허가, 채굴권 리스의 허가, 그 외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각 주 및 준정부의 정부는 그 외의 관련 법규(선주권법, 환경법 등)를 제정하고 있어, 탐사, 개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법령을 함께 받게 된다.³¹⁾

II. 광업권의 내용

1. 초기 광물탐사 및 채굴권의 라이선스 (Initial Exploration License)

(1) 의 의

각 주 및 준정부에서는 광물탐사 및 채굴 라이선스 또는 광물탐사 및 채굴허가신청의 대상이 되는 광물탐사와 채굴방법에 대하여, 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한 작업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작업계획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소관 주무장관이 신청자가 광물탐사 및 채굴 계획을 실행할 만한 충분한 자금 및 기술력을 가진다고 인정하게 된다. 또한, 소관 주무장관은 동 작업계획서에 특별한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2) 일반시민의 참가와 공고 및 보상

QLD주를 제외하고는 광물탐사 및 채굴권신청이 있게 되면, 일반 시민에게 공고하게 되어 있어서, 보통의 경우 주정부의 관보 등에 공고를 게재하게 된다. QLD 주에서는 특별하게 신청 전후에, 토지소유자에게의 통고 및 소유자의 허가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다. 또한 이와

31) 이하에서는 <http://www.industry.gov.au>, <http://www.dpi.nsw.gov.au/minerals>, <http://www.doir.wa.gov.au/mineralsandpetroleum>, <http://www.pir.sa.gov.au/sector5.shtml>, <http://www.minerals.nt.gov.au>, <http://www.nrme.qld.gov.au/index.html>, <http://www.dpi.vic.gov.au>, <http://www.mrt.tas.gov.au>, 참조

유사하게, NSW주에서도 사업자는 광물탐사 및 채굴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와 토지접근(access)에 관한 동의(경우에 따라서는 광업감독인(Warden)에 의한 조정, 접근조정에 관한 동의가 필요)를 얻어야 한다.

※ 접근조정 (Access arrangement)

접근조정(Access arrangement)이란, 광물탐사 및 채굴권 신청자가 광물탐사 및 채굴작업을 실시할 때의 조건을 규정한 동의서로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체결된다. 조정자(Arbitrator)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한다. 접근조정(Access arrangement)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 토지접근에 관한 허가기간
- 탐사작업 실시장소와 그 토지에 대한 접근방법
- 탐사 작업의 내용
- 탐사실시에 관련된 작업 조건
- 토지 액세스 및 광물탐사 및 채굴 작업 실시시에 환경보호에 관한 준수 사항
- 탐사작업에 수반하는 보상금의 내용
- 분쟁 또는 의의가 생겼을 경우의 해결방법
- 접근조정(Access arrangement)의 변경 방법
- 그 외 접근조정(Access arrangement)에 포함하는 사항

(3) 보상금의 지불

모든 주 및 준정부의 경우, 신청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토지에의 접근에 관한 권리의 제한, 토지에 대한 접근의 방해, 토지내의 구조물 그 외의 자산상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 보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보상금의 금액은 광물자원의 가치에 관련되어 산정되지는 않는다. 주에 따라서는, 보호예금(Security Deposit 또

는 사적자산채권(Private Property Bond)을 징수함으로써, 토지사용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불의 확실성을 담보하고 있다. WA 주, VIC주, SA 및 NSW주에서는 토지사용의 제한, 수입의 손실 및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한 보상도 요구하고 있다. 모든 주 및 준정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상기한 권리의 허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광구의 크기 (Area Size)

각 주 및 준정부 정부는 광물탐사 및 채굴허가 대상지역에 대하여 위선망단위(graticular unit : 경도 1분 × 위도 1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위선망 단위의 1블록은, 경도 5분 × 위도 5분, 즉 25유닛이 된다. 광물탐사 및 채굴권 허가의 대상이 되는 최대 규모는 신청자에 의해서 1에서 100블록까지 다양하게 된다. 모든 주 및 준정부의 소관 주무장관은 승낙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보다 큰 면적의 허가가 가능하다. 유닛은 “서브 블록”이라고도 불린다..

(5) 허가기간(Time Period)

광물탐사 및 채굴권 허가기간은, 일반적으로는 2년 내지 6년으로, 갱신시에 처음 허가받은 면적을 축소시키도록 하고 있다. 소관 주무장관은 특별한 경우, 이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갱신시의 감구면적은 해당 광물탐사 및 채굴권 허가 면적의 1/2 이다. 광물탐사 및 채굴권신청을 위한 신청요금은 각 주 및 준정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2. 평가 리스/보유유지 라이선스 (Assessment Lease/Retention License)

이러한 종류의 권리에는, 평가리스(Assessment Lease), 보유유지 라이선스(Retention License), 광물탐사 및 채굴보유유지 라이선스(Exploration

Retention License), 연결 권리(Bridging Title), 광물개발 리스(Mineral Development Lease) 등이 있다. 이러한 권리에 의하여, 광물탐사 및 채굴권자는 실제의 채굴작업을 개시하지 않아도 권리를 보유하여 유지할 수 있다. 광물탐사 및 채굴권 보유자는 광물탐사 및 채굴 조사의 대부분이 종료되고 있는데, 광상개발을 실시하는 것이 충분히 경제적이지는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리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경제상황이나 광물자원 가격의 침체 또는 시장조건의 악화와 추출 기술 개선의 필요성 등의 원인으로 기인하는 경우도 있다. 평가리스에 의하여 기업 또는 개인이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조사, 검토를 실시하는 동안, 그 광구에 대한 권리를 보유·유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광구의 이전, 광산계획, 환경영향평가의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3. 채굴 리스 (Mining Lease)

대부분의 주 및 준정부에서는 누구라도 채굴 리스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허가가 종료된 광물탐사 및 채굴권 또는 보유유지 리스권의 보유자가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광산개발계획 제안(proposal)의 개요를 제출해야 한다. 각 주에 따라서는 신청자가 “Miner's Right”를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채굴리스권리의 취득요금은 다양하고, 허가 기간은 일정하게 주어지거나 또는 무기한으로 설정된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Miner's Right”란, 전문적인 경험이 부족한 채굴사업자나 일반 시민이 정부소유지에서 표본채집 또는 취미의 목적으로 소규모의 탐사를 실시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주에 따라서는 이 권리가 허가 또는 리스에 앞서서 대상광구에 대한 접근을 허가하는 권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QLD주에서는 프로스펙팅 허가(Prospecting Permit, PP)라고 불린다. PP에서는 구획의 토지

에만 적용되는 구획 프로스펙팅 허가(Parcel Prospecting Permit, PPP) 또는 관련 모든 지역 전반(District)으로 탐사가 허가되는 지역 프로스펙팅 허가(District Prospecting Permit, DPP)가 있다.

TAS 주를 제외한 각 주 및 준정부에서는 채굴 개시신청을 위한 공고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정부 관보 또는 해당 지역의 지방 신문에 게재된다. TAS주에서는, 신청자가 채굴계획 대상 광구의 구획에 공식적인 신청표지를 반드시 설치하여야만 한다. 또한, 채굴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자는 토지 소유자나 사용자를 포함하여 일반 사회에 공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모든 주 및 준정부에 있어서, 채굴 리스의 인가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제정되어 있고, 장소에 따라서는 지역공동체에서의 공청회에 관한 규정도 있는 TAS 주에서는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해관계자와 사유지의 소유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에서는 채굴작업이 사유지에 있는 거주지 또는 그 외의 이용지의 주변 100m~200m의 범위(SA주에서는 400m의 범위)에서 행해지는 경우, 사전에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채굴 작업을 위한 보상금의 금액은 광물탐사 및 채굴 라이선스 신청의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지불된다.

Ⅲ. 광업 활동 허가를 위한 절차 (Mining Approval Process)

광업 개발은, 다음과 같은 3단계의 기본적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 초기 광물탐사 및 채굴
- 정밀 탐사/평가
- 실제의 광산 개발 및 조업

탐사를 위한 토지접근에 대해서, 각 주 및 준정부의 정부가 직접적인 관할권과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각 주 및 준정부는 환경문제, 도

시개발계획, 선주민 소유지 등에 의하여 탐사사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사업자가 관련된 법규의 필요 조건을 준수하면 광물탐사 및 채굴권은 인가된다.

IV. 최저 지출 조건 (Minimum Expenditure Conditions)

1. 의 의

각 주 및 준정부의 정부는 탐사라이센스, 광물탐사 및 채굴 라이선스, 채굴리스 등의 보유자가 광구에 관해서 연간에 지정된 최저 지출액수의 소비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 조건은 광물개발에 할당될 수 있었던 토지가 적극적으로 개발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각 주의 광업성(관청)은 최저 지출조건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관한 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 광구에서 실제로 소비한 비용은 연차 활동보고서로 권리보유자가 보고한다. 광업성은 보고된 지출액을 확인·검토하여, 그것이 최저 필요 지출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권리보유자에게 통고한다. 그리고 권리 보유자가 최저 지출 조건을 특별한 사정에 의해 채울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 조건이 면제시켜주게 된다. 각 주의 광업법은 권리보유자가 동조건의 면제에 대한 신청을 인정하고 있다. 이의가 있는 신청(신청의 약 5분의 1)은 감독 재판소(Warden's Court)에 직접 송치되어 심문을 함으로써 의견서가 관할 주 및 준정부 광업성에 보내진다. 면제신청은 광업법으로 규정되는 면제범위에 따라서 신청이 불가피한 사정의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한다고 규정한다. (Mining Act (WA) 102 (2) 광업법(WA) 제102조(2))³²⁾

32) 이하에서는 <http://www.audit.wa.gov.au/> 참조

2. 지출 조건 면제의 이유

- ① 광산권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경우
- ② 작업 평가 및 향후의 광물탐사 및 채굴 또는 채광 계획/자본을 조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
- ③ 시설 및 기계의 구입·조립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 ④ 토지를 작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
- ⑤ 광상이 경제적이지 않은 경우
- ⑥ 장래에 가동하는 광상의 경우
- ⑦ 정치적 또는 환경적 문제에 의하여 채광이 저해 혹은 제한된 경우
- ⑧ 프로젝트안의 다수의 광구를 대상으로 한 일괄 비용의 경우

V. 환경 보호 (Environmental Protection)

1. 의 의

연방 정부가 환경보호에 관한 일부의 법률을 소관하고는 있지만, 각 주 및 준정부의 정부가 각각의 지역에 있어서 광업활동에 관한 환경 관리를 주체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 각 주 및 준정부 그리고 연방에 의한 이원적인 법률이 중복되는 경우 또는 양 법률의 사이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연방법이 주법보다 우선하게 된다. 그러나 개인 및 기업은 비록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연방 정부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각 주 및 준정부의 개발 계획법과 환경법에 의한 내용에 구속된다. 호주에 있어서의 환경관리는 자원개발 계획(Resources Planning) 및 개발의 모든 단계(평가, 건설, 조업, 폐산, 복구)의 통합적인 관리에 근거하고 있다. 각 주 및 준정부간에

그 절차는 다소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면들이 나타나고 있다.³³⁾

2. 평가와 허가 (Notice of Intention, Proposal or Initial Advice Statement)

광산사업에는, 정부에 의한 평가와 허가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평가의 정도는 그 사업이 환경에 주는 잠재적인 영향력과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공식적인 평가와 허가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개발계획이다. 개발계획은 다음과 같은 시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요구된다.

- 신규 광산 활동의 개시전
- 기존 광산 조업의 변경전
- 구폐지 광산의 재개전

개발계획은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서류로서 제출되지만, 동시에 정부 허가심사의 개시 또는 지역사회에의 그 프로젝트의 공고를 실시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개발 계획은 “Notice of Intention (NOI)”라고 일컬어 지는데, 각 주에 따라서는 “IAS Proposal”라고도 한다.³⁴⁾

3. 정부에 의한 사정 (Government Assessment)

통상적으로 몇 개의 정부기관이 계획의 평가에 관련되고 있다. 관계 관청으로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에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환경보호청, 광구의 인가나 관리를 실시하는 광업소관청 혹은 자원소관청 그리고 그 지역개발 계획을 인가해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

33) 이하에서는 <http://www.industry.gov.au>, <http://www.dpi.nsw.gov.au/minerals>,
<http://www.doir.wa.gov.au/mineralsandpetroleum>, <http://www.pir.sa.gov.au/sector5.shtml>,
<http://www.minerals.nt.gov.au>, <http://www.nrme.qld.gov.au/index.html>,
<http://www.dpi.vic.gov.au>, <http://www.mrt.tas.gov.au>, 참조

34) Laws and Regulation Handbook 참조

치체 정부가 포함된다. 소관 관청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관해서 개발 계획(Notice of Intention, NOI)을 심사한다.

- 환경에 대한 영향의 가능성, 특히 규모, 기간, 빈도 및 영향의 범위
- 주위의 생물,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
- 계획 사업에 따르는 직·간접적인 환경 영향
- 법정 의무계획안, 공중위생, 용수, 수질 및 자원 관리 등의 여러 문제

개발 계획의 검토에 의하여 그 프로젝트가 환경에 대한 유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의 결정이 이루어지며, 이에 관한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4. 환경 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EIA는 계획되고 있는 사업 또는 개발이 환경에 대하여 리스크 혹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평가하는 공식적인 절차이다.³⁵⁾ 또한, EIA의 심사절차는, 그 허가여부가 지역사회에 가장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수집의 절차라고도 할 수 있다. 심사의 기준에는 생태계, 사회, 경제, 선주민의 이해 및 그 장소의 현재와 장래적인 이용(환경지속 가능성) 등이 포함된다. 연방의 EIA에 관한 법률은 환경보호 및 생물 다양성 보전법(Environmental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 EPBC Act)이다. EPBC법은 국가 수준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충분하게 검토되어 연방 정부의 절차진행에 있어서 확실하게 검토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은 현재 국가 수준의 환경에 관한 중요성에 있어서 7가지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 세계 유산
- 국가적 유산

35) 이하에서는 <http://www.environment.gov.au/> 참조

- 국제적으로 중요한 국제 습지 조약 대상 습지(Ramsar wetlands)
- 멸종 위기 지정종 및 생태계
- 지정된 이동종
- 연방 정부 관리 해역
- 원자력 관련 사업(우라늄 채굴을 포함한다)

EIA는 환경 문제를 기초적인 수준에서 검토하지만, 제안된 프로젝트에 있어서 환경적인 중요성 때문에, 다양한 수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통상의 광물탐사 및 채굴 또는 시료채취를 실시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층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정부기관은 지역사회와의 대화를 통하여 환경상의 과제 및 우선 순위를 검토한다. 그 이상의 검토에 관하여는 공개 환경보고서(Public Environmental Report, PER) 또는 환경 영향 진술서(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IS)의 작성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2가지의 선택수단은 완전히 다른 것이며, PER는 EIS의 전단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수단에 의한 검토가 적절한가의 결정은 개발계획서를 재검토한 다음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세한 검토에 부담되는 경비는 그 프로젝트를 제안한 사업자에게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5. 공개 환경보고서 (Public Environmental Report, PER)

공개 환경보고서(PER)는, 환경에의 영향이 크지만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 작성된다. 이것은 지방 또는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에만 관련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PER 작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단일 혹은 한정된 수의 환경 문제
- 한정적인 규모, 기간, 빈도 및 영향의 범위
- NOI의 중요한 부분에 한정된 경우

6. 환경 영향 진술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IS)

환경에의 영향을 평가할 때에 사용되는 광범위하고도 상세한 환경 영향의 평가를 실시하는 문서이다. VIC주에서는 “Environmental Effects Statement (EES)”라고 한다. EIS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실시 이유 및 장소 등과 관련된 문제를 개별적으로 검토한다.

- 용지 특유의 문제
- 주변의 문제
- 보호 문제
- 사업 계획의 특징

이와 같은 문제는 기본적으로 환경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검토를 필요로 하게 되며, 지역사회로부터의 개별적인 자문과 검토를 필요로 하게 된다. EIS에서 적용되는 전형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영향
- 상세 정보와 그 정보의 근거가 되는 증거 서류
- 지속적인 추가정보의 필요성
- 영향의 규모와 기간 및 빈도와 광범성

7. 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특별히 복잡하거나 또는 논의의 여지가 많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조사위원회가 소집된다. 이것은 공청회 및 사업실시에 대한 지지자 및 반대자로부터의 의견서 제출을 수반하는 공적인 절차로서의 조사과정 이 포함된다. 조사위원회는 공공의 장소에서 정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조사위원회는 새로운 기술, 개발 사업 혹은 대규모 토지 이용을 하는 경우, 혹은 몇가지의 의견이 나뉘는

경우에 중요하다. 조사위원회는 몇 인의 독립한 위원중에서 한 명(경우에 따라서는 두 명)의 위원이 의장을 맡는다. 관계 부처(예를 들면, National Parks and Wildlife Service),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 EPA), 일반 시민 등은 조사위원회에 대하여 사업에 대한 스스로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 NSW주에서는, 반대 의견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 사업 계획에 대해서 특정 사업에 관한 진술(Preferred Activity Statement, PAS)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조사위원회가 모든 의견을 집약하고 그 대신에 그 계획이 인가되어야 할 것인가 아닌가에 관한 여부를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VI. 선주민의 토지에 관한 권리

1. 배 경

에너지광물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선주민의 토지에 관한 권리는 크게 선주권(Native Title)과 선주민 토지소유권(Indigenous Freehold Title)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호주 대륙을 유형지로 한 이주가 시작된 당시, 영국의 법률에 의하게 되면, 호주 선주민의 권리는 인정받지 못했다. 1901년에 독립국이 되고 나서도, 선주민은 선거권도 인정되지 않고, 전국 인구조사에도 포함되지 않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 되어, 1967년까지 완전한 시민권도 주어지지 않았다. 연방선거로 선주민의 선거권이 모든 주에서 인정된 것은, 1962년이 되고 나서이다. 이에 앞서 선주민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여러가지 법률이 제정되었고, 선주민 보호구역지정 등의 시책도 시행되었지만, 그러한 법률이나 시책은 최저한의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보호구역에 사는 선주민은 일반인의 눈으로부터 격리되어 비참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³⁶⁾

36) 이하에서는 Laws and Regulation Handbook 참조

2. 선주권의 존재

호주에서는 1992년의 Mabo판결에 의하여 선주민에게 전통적인 토지와 관련된 권리를 가짐으로써 선주권의 존재가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이것에 근거하여 1993년에 선주권법이 제정되었다. 선주권법에서의 선주권은 미이용의 정부소유지 및 방목리스지 내에 있는 토지나 수역 등에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작용의 농업 용지나 주택용지, 및 인프라 용지, 공공기관 용지 등에서 선주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1996년의 획기적인 Wik판결에 있어서, 방목리스지에 선주권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선주권의 존재는 토지소유권의 존재와는 다르다. 선주권이 존재하는 것은 그 토지에서의 특정의 관습적 권리가 존재하고, 그 권리의 보유자에게 그 권리의 행사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선주권이란 토지 소유, 방목리스 등의 다른 권리에서 분리되어진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선주권은 다른 특정의 토지이용의 권리, 예를 들어 농장으로서의 차지권(방목리스지)과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3. 선주 민족 토지소유권 - 선주민의 집단으로서의 토지 소유

선주 민족집단 소유지에서는 법적으로는 선주권은 소멸하고 있지만, 그 대신에 선주민에 의하여 선주권보다 강한 선주민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다. 사적 보유지와 같은 배타적 선주 민족 토지소유권은 선주권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전에 SA주에서는 1966년에, NT준정부에서는 1976년에 제정된 법률에 근거해 설정되어 있다. 그 면적은 SA주에서 약 26만km², NT준정부에 약 59만km², 합계로 약 85만km²라고 하는 광대한 토지이다.

이상과 같이 호주에 있어서는 광물탐사 및 채굴 개발권의 허가를 얻는 경우, 선주권이 존재하는 토지와 선주 민족토지 소유권이 존재하는 토지에 있어서, 선주민의 권리 및 절차가 다르게 나타난다. 선주

민족 토지 소유지권에 대해서는, 선주민에게 거부권이 있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로 되고 있다.

4. 선주민 토지에 있어서의 광업 활동 (Mining on Indigenous Freehold Land)

NT주와 SA주에 있어서 광업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선주민 토지 소유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광물탐사 및 채굴 개발권의 신청 방법 및 인가 절차는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토지를 소유하는 선주민의 토지 신탁(Aboriginal land trust)에 의한 경우만이 허락과 동의에 관한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 선주민 소유지에 있어서의 광물탐사 및 채굴·개발을 실시하는 경우, 그 주 및 준정부의 일반적인 광업법과 선주민 토지권법의 두 개의 법률이 적용된다. NT준정부에서는 광업법(Mining Act)과 선주민 토지권법(Aboriginal Land Rights Act)이, SA주에서는 광업법(Mining Act)과 선주민 토지 피체체체라/마라린가 토지법(Aboriginal Land Pitjantjatjara/Maralinga Lands Act)가 적용된다. 광물탐사 및 채굴권이 허가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선주민이 소속하는 선주민 토지 관리 협회 및 주의 소관 주무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선주민 소유 토지에 있어 광물탐사 및 채굴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앞서서 광물탐사 및 채굴권을 신청 할 필요가 있지만, 선주민 소유 토지에 있어서의 광물탐사 및 채굴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단계의 절차가 진행된다.³⁷⁾

(1) 절 차 1

광업법(Mining Act)에 따라서 신청을 수행해야 한다. 이것에 관하여 주의 소관 주무장관은 사업자가 광업법에 따라서 교섭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게 된다.

37) 이하에서는 <http://www.minerals.nt.gov.au/> 참조

(2) 절 차 2

해당하는 주의 선주민 토지법(Aboriginal Land Act)에 따라서 광물 탐사 및 채굴권 신청자는 대상이 되는 토지를 소유하는 선주민이 소속하는 선주민 토지 관리 협회(Land Council)와 교섭을 진행하여야 한다. 선주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일부 혹은 전체에 대하여, 광물탐사 및 채굴권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선주민에 의한 거부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향후 5년간은 유예기간(Moratorium Period)이 되어, 광물탐사 및 채굴 개발에 관한 교섭을 재개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된다. 단, 교섭이 결렬되고 나서 2년 후에, 소관 주무장관의 동의에 의하여, 선주민 토지 관리 협회는 교섭을 재개할 수 있다. 교섭이 결렬되고 5년 지나면 광물탐사 및 채굴권신청자는 선주민 토지 관리 협회와 교섭 재개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신청자는 30일 이내에 새로운 신청서를 선주민 토지 관리 협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신청자는 광물탐사 및 채굴권의 허가를 얻은 후에 채굴권 리스의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선주민 토지권법에 따르는 토지 관리 협회로부터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지만, 동법 제46조에 따라 선주민 토지 관리 협회와 광업 협정(mining agreement)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절 차 3

광업법에 따라서 광물탐사 및 채굴권의 허가 또는 불허가를 결정한 다. 광물탐사 및 채굴권 허가의 조건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소관 주무장관이 결정한다.

VII. 호주 특유의 선주권 제도

1. 선주권 (Native Title)의 의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행해진 제도개혁으로 선주민 그룹에 의한 토지의 취득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의 연방 최고법원에 의한 마보 판결까지, 선주민이 전통적으로 관련을 가져온 토지에 있어서의 권리는 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즉, 연방 최고법원은 마보 판결에 의하여 선주민의 전통적인 권리는 호주 대륙이 식민지화된 시점에서 소멸하지 않았으며, 그 권리는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식민지화 된 후의 행위에 의하여, 선주민의 권리가 소멸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주민의 권리가 토지 보유권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선주민의 권리와 이해관계는 영국 통치 이전부터 존재해 온 선주민의 규칙(laws)이나 관습(customs)에 근거한다고 하고 있다. 연방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상응하여, 호주 연방정부는 1993년에 선주권법(Native Title Act)을 제정하였다. 동법에 의하여 호주의 선주민은 토지에 대해서 선주권리의 신청·인가를 받는 절차를 처음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게다가 1993년 이후의 선주권법 개정과 연방 최고법원의 판결로, 선주권의 의미가 명확화하게 되었다. 연방 최고법원에 의하면, 선주민은 전통적인 규칙이나 관습의 내용에 의하여 그룹 또는 개인으로서 선주권을 보유할 수 있지만, 선주권의 매매는 하지 못하였고, 양도 또한 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선주권은 접근·사용 권리로부터 독점·보관·유지할 수 있는 권리에 이르는 여러가지 형태를 취할 권리로 자리매김 되었다. 선주권은 토지에 대하여 법률 또는 특별한 행위에 의해서 설정되어 있는 다른 권리와 조화적으로 행사될 수 있으며, 토지뿐만 아니라 수역에서도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방 최고법원은 선주권에 관한 연방정부와 각 주 및 준정부의 정부 각각에 대한 행정권의 역할에 관하여도 명확화하게 하였다. 이에 따르면 선주권 문제는 연방정부의 관할하에 있어서, 각 주 및 준정부의 법규는 연방의 법규에 근거하여 제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당초에 WA주 등 일부의 주는 연방정부가 설정한 선주권 시스템에 강하게 반발하여, 각주에서 대체 하는 규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WA주와 NT주의 대체규정은 연방상원(the Senate)에서 각하 되었고, QLD주의 대체규정도 많은 내용의 변경 이후에 승인되었다. 선주권법은 선주권의 존재 장소를 확정하는 절차와 선주권에 영향을 주는 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절차 그리고 선주권이 침해 혹은 소멸했을 경우의 배상에 관한 절차를 확립하였다. 선주권법에 의하여 선주권 보유자 또는 선주권 신청자는 그 토지에 대한 사업 활동(예를 들어 광물탐사 및 채굴 활동)의 신청에 대하여, 협의권(right to be consulted) 또는 의사결정에 참가할 권리가 주어지고 있다. 선주민은 선주권법에 의해서, 고용이나 전통보호 등의 기회를 포함하고, 스스로의 커뮤니티의 이익에 관한 교섭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³⁸⁾

또한, 선주권법은 선주권신청자 및 선주권 보유자의 대표 조직의 승인 및 운영을 위한 구조도 확립하였다. 연방정부는 선주권법에 의하여 선주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예로서 선주권 대표 조직, 연방 선주권 조정 기관(National Native Title Tribunal, NNTT), 호주 연방법원 등이 있다.

2. 연방 선주권 제도 (Commonwealth Native Title Scheme)

선주권 취득절차는 광업에 관련한 광물탐사 및 채굴 개발권의 신청 등의 행위에 의하여 제기되지만, 항상 선주권에 관한 절차가 필요한 것

38) Laws and Regulation Handbook 참조

은 아니다. 선주권에 관한 절차는 선주권 보유자가 특정의 지역에 대하여 그들의 선주권의 주장하는 것에 관한 결정의 결과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주 및 준정부에서는 연방 선주권 체계와 거의 동일한 선주권 체계를 적용하고 있지만, 예외로서 VIC주, NSW주 및 TAS주에 있어서는 간이신속절차(expedited process)가 적용되지 않았다.

3. 선주권 확정을 위한 절차 - 선주권 신청 심사 (Native Title Determination Process “Registration Test”)

(1) 신청등록 (Filing)

선주권신청의 신청등록은 선주권 신청단체가 존재하는 주의 주도에 있는 호주 연방법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SA주에서는, 고등법원 (Supreme Court)도 선주권신청의 신청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등록을 하게 되면, 법원은 우선 신청내용이 적절하고 정확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³⁹⁾

(2) 신청 (Registration)

NNTT가 신청에 관한 심사(registration test)를 실시하지만, 심사에 합격했다고 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 있어서 선주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선주권법에 의한 적용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검토기간을 필요로 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사에 합격한 신청은 선주권신청등록(the Register of Native Title Claims)을 하고 선주권신청자는 교섭권(Right to Negotiate)을 포함한 교섭 과정에 있어서의 권리가 부여된다. 심사에 합격하지 않았던 신청은 선주권 신청권이 보유 유지될 수 있지만, 발생하지 않게 된다. 만약 NNTT가 선주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호주 연방 법원에 NNTT의 결단이 올바른지의 여부에 관한 재심리를 요구할 수 있다.

39) 이하에서는 <http://www.nntt.gov.au/applications/> 참조

(3) 공 고 (Notification)

NNTT는 선주권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선주권 신청이 이루어진 것에 관한 내용을 공고한다. 공고의 내용에서는 선주권의 확정에 의해서 이해관계에 영향이 있다고 추정되는 모든 개인, 법인, 각주 및 준정부의 정부에 대하여 조정(mediation)에 대한 참가자가 되는 신고를 법원에 대하여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 신고는 공고로부터 3월 이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조정에 대한 참가신고인으로부터의 신청을 수리하고, 신고인에 대하여 참가자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절차는 통상 선주권 신청자와 그 외의 이해관계자 및 그 법적 대리인에 의한 공청회(directions hearing)에 의해서 수행된다. 공청회에서 법원은 참가자 리스트를 작성하여 필요에 따라서 신청승낙서 내용을 NNTT에 통지한다. NNTT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을 경우, 합의 사항은 법원에 통지된다. 이에 근거하여 법원은 선주권의 합의 사항에 따라서 선주권의 확정을 결정하게 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NNTT는 그 내용을 법원에 보고한다. 이에 근거하여 법원은 새로운 조정을 실시하던지, 아니면 재판으로 심리하여 선주권을 확정할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4. 광물탐사 및 채굴 개발권의 신청 (Mining/Exploration Application)

(1) 공 고

각 주 및 준정부의 소관 관청은 현재 계획되고 있는 개발사업의 권리를 허가하는 일정에 관한 예정을 공고한다. 각 주 및 준정부에 따라서는 광구권 신청자가 신청내용을 관보(Government Gazette)나 일정한 신문간행물 등에 게재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공고에 대하여 소관 관청은 해당 사업에 대한 간이절차(Fast-tracking)

를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여부도 일정상에 언급할 필요가 있다. 선주민이 대상지역에 있어서 선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들은 연방법원에 대해서 3월 이내에 선주권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은 상기한 바와 같은 선주권 신청에 대한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⁴⁰⁾

(2) 정식 교섭 (Formal Negotiation)

간이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관계자는 각 주 및 준정부에 의한 교섭과정에 참가해야 한다. 관계자는 NNTT 또는 중립적이라고 합의된 조직에 의하여 운영되는 조정을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SA주에서는, 중립적인 조직으로서 환경자원개발재판소(ERD)가 중재를 수행한다. 참가자가 허가에 필요한 합의를 작성할 수 있는 경우, 합의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물탐사 및 채굴권은 허가된다. 공고일부터 6월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 모든 참가자는 NNTT 또는 중립적인 조직이 중재를 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중재 (Arbitration)

중재기관은 중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광물탐사 및 채굴 개발권의 허가에 관하여 조건부로 허가한다. 또한, 허가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일정한 경우의 판단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연방 장관은 판단결정 절차에 대한 간섭 또는 이의신청을 2개월 이내에 진행시킬 수 있다.

(4) 간이절차 허가신청 (Expedited “Fast-tracking” Process)

신청 대상사업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손해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주 및 준정부의 정부는 간이절차 허가신청을

40) 이하에서는 <http://www.industry.gov.au>, <http://www.dpi.nsw.gov.au/minerals>,
<http://www.doir.wa.gov.au/mineralsandpetroleum>, <http://www.pir.sa.gov.au/sector5.shtml>,
<http://www.minerals.nt.gov.au>, <http://www.nrme.qld.gov.au/index.html>,
<http://www.dpi.vic.gov.au>, <http://www.mrt.tas.gov.au>, 참조

채택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간이절차의 허가신청이 인정되는 경우는 탐사 또는 소규모 탐사에 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이절차의 적용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탐사권은 허가된다. 선주권과 관련된 당사자로부터 간이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것을 수용하여 예비적 교섭(Preliminary)이 개시된다. NNTT는 이러한 교섭을 지원할 수 있다. 교섭 후에는 선주권 신청자가 간이절차의 적용을 합의하였을 경우, 이의제기 취하의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탐사권은 허가된다. 만약 관계자가 간이절차를 적용하지 않을 것에 합의했을 경우, 정식적 교섭절차(Formal Negotiations)를 개시하게 된다. 적절한 기간 내에 합의에 이르지 않았던 경우, 이의제기의 판정은 NNTT에 의하여 심리된다.

제 4 절 에너지 개발 부문별 규제 체계

I. 석유개발에 관한 규제체계

1. 개 요

현재 호주 연안 퇴적분지의 17%, 대륙 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분지의 26%만이 석유 개발 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그리고 호주에는 50여개가 넘는 퇴적분지가 있으며, 현재 이 중 12곳에서 가스와 석유를 생산중이고, 상업화를 할 수 없는 매장지 4곳이 있다. 2006년 석유 공급을 통해 227억 불에 달하는 경제적 효용을 이룬 만큼 새로운 원유 발견은 이러한 효용을 지켜나가는 데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일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세금과 특허권 사용료로 81억 불의 수익을 거두었다.

가장 유력한 석유 저장지로는 북부 호주 지역의 Arafura Sea, Faust, Capel과 Lord Howe Rise의 Fairway 분지 등 동부 지역, 타스마니아

남부 지역이 있다. 내륙에는 Canning, Georgina, Warburton, Darling, Gunnedah, 중앙호주 지역의 Simpson 분지가 있다.

원유 탐사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주요 전략의 일환으로 호주 정부는 호주 연안 지역을 정기적으로 탐사 대상으로 해제하고 있다. 2007년에는 6개의 퇴적분지가 있는 34개 지역이 해제되었다.

2. 작업계획입찰제 (Work program bidding system)

호주는 작업계획입찰제를 통해서 연안 지역 석유 탐사를 실시하고 있다. 탐사허가 신청 이전에 탐사 지역 신청서, 입찰 평가기준, 허가 조건 및 행정적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신청서는 반드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⁴¹⁾

(1) 기술 평가서

석유 매장 예상지역에 대한 신청업체의 기술적 평가에는 탐사작업 계획을 자세히 명시하여야 하며, 예상 시추공(well)의 수 및 목표량, 탄성과 탐사수, 관련 자료의 평가 내용 등이 포함된다.

(2) 최소 기간 보장 작업계획서(처음 3년간)

최소 비용, 석유 탐사 시추공, 탄성과 탐사 및 기타 탐사 활동(탐사 기술 자세히 명시), 자료 평가, 허가 지역 내에서의 기타 작업 내용을 담은 계획을 허가 받은 후 첫 3년 동안 매년 작성한다.

41) 이하에서는 <http://www.industry.gov.au>, <http://www.dpi.nsw.gov.au/minerals>, <http://www.doir.wa.gov.au/mineralsandpetroleum>, <http://www.pir.sa.gov.au/sector5.shtml>, <http://www.minerals.nt.gov.au>, <http://www.nrme.qld.gov.au/index.html>, <http://www.dpi.vic.gov.au>, <http://www.mrt.tas.gov.au>, 및 “KOTRA, 자원개발진출 가이드 - 호주 (2008.8)” 참조

(3) 2차 작업계획서 (4~6년)

최소 예상 지출, 탐사 시추공, 탄성과 탐사 및 기타 탐사 활동(탐사 기술 자세히 명시), 자료 평가, 허가 지역 내에서의 기타 작업 내용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2차 탐사 기간 중 매년 작성한다.

(4) 탐사 신청업체 자격 요건 관련 제출 내용

- 신청업체 및 주요 피고용인의 기술적 자질
- 신청업체가 기술적 자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신청업체의 투자 재원(제안한 작업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증거 포함)
- 각 신청사의 가장 최근의 연례 및 분기별 보고서
- 신청서를 제출하는 컨소시엄의 실행 능력에 대한 증거, 충분한 조정이 이루어져 합작운영 협정서(Joint Operating Agreement)를 체결했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 일반적으로 투자약정서(HOA : Heads of Agreement)로 충분
- 신청에 참여하는 각 당사자의 참여지분(%)
- 석유 및 침수지 보호법(PSLA : Petroleum Submerged Lands Act 1967)에 따라 지난 5년간 탐사 신청사의 작업계획 허가가 취소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신청업체가 이전의 실패가 현재 신청과는 무관하다고 믿는 이유
- 신청업체의 중역이 지난 5년간 신청이 기각된 회사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상세한 내용

(5) 탐사 허가 갱신

- 대부분의 경우, 탐사 허가는 처음 6년 이후 2년, 5년 단위로 갱신 가능하며, 기존에 탐사 허가권을 받은 자가 허가 갱신을 원하는 경우 허가권 만기 전 3-6개월 사이 신청서 제출 필요

- 갱신 후 5년 허가권 수령
- 갱신 가능 구역의 수는 통상 이전 허가 구역의 절반 수준이며, 6개 이상 구역의 허가 신청 시에는 특수 조항이 적용된다.
- 1구역 허가 신청은 갱신 불가능

(6) 신청서 평가기준

- 탐사 허가권을 신청하는 회사는 허가 받을 지역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와 특별조건(예, 환경 보호, 방위, 어업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온라인 특별 공지 사항(www.ret.gov.au)에서 찾아보거나 Australian Petroleum News를 통해 업데이트 되는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 신청업체는 작업계획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공동위원(Joint Authority)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투자 재원 및 전문 기술의 타당한 보유
- 이전에 허가받은 계획이나 현 작업계획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 활용 가능성 보유
- 신청서를 제출하는 컨소시엄의 실행 능력(충분한 조정을 통해 합작 운영 협정서 Joint Operating Agreement를 체결했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 포함)

(7) 신청업체의 호주 내 과거 석유 탐사 성과 및 다른 지역에서의 관련 성과

모든 탐사 허가의 기본 목적은 석유 발굴에 있어 유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허가된 탐사 지역에서 최소한의 보장 기간 동안 최대량의 석유 생산 가능성이 있는 입찰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입찰시 신청업체가 제안한 작업계획은 그 지역의 탐사 상태를 크게 진전시킬 수 있어야 하며, 기존의 작업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열등하다고 판단되는

작업계획은 탐사의 가치가 없다고 평가된다. 최소 보장 작업계획을 토대로 허가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경우에는 2차 작업계획서에 제안한 작업 금액 및 시기를 상기 기준에 맞춰 평가한다.

II. 광물개발에 관한 규제체계 탐사

1. 관련 법규

주 및 노던 테리토리는 영해의 저조선(low-water mark)으로부터 3해리 내의 해역과 해저 자원에 대한 권리 및 권한이 있으며, 연방법(Commonwealth Act)을 모델로 각기 보완적인 연안 지역 광물법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이 법은 영해 3해리 내의 해저 광물 자원에 적용될 것임. 2006년 10월 기준 각 주의 보완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또한 호주 연방정부는 주 및 노던 테리토리 사법관할권 내 지역에서의 연안 지역 광물 탐사활동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⁴²⁾

2. 관련 라이선스

관련 라이선스에는 다음과 같은 라이선스가 있다.

(1) 탐사 라이선스

프로젝트의 탐사 단계에서 발급 받는 허가권이며, 해당 지역에 대한 독점권 및 광물 견본 회수 권리를 허가 받을 수 있다. 통상 모든 연안 지역에 대해 라이선스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500구역(block)까지 가능하다. 라이선스는 4년간 유효하고, 기존에 허가 받은 지역에서 최대 50% 면적에 대해 3번까지 라이선스 갱신이 가능하다. 신청비는 A\$3,000이며, 라이선스를 받은 기간 동안 매년 A\$2,000 또는 구역당 A\$200(큰 금액 적용)을 지불해야 한다. 라이선스 갱신료는 A\$600이다.

42) 이하에서는 KOTRA, 자원개발진출 가이드 - 호주 (2008.8) 및 Laws and Regulation Handbook 참조

(2) 유보 라이선스

유보 라이선스는 탐사 단계에서 상업적 목적의 채굴 단계로 프로젝트를 이양하는 동안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한 허가권이다. 엄격히 제한된 시간 동안 탐사 라이선스 소유자에게 해당 지역에 대한 권리를 주기 위한 것이다. 유보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탐사 지역에 상당량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어야 하며, 단기간 내에 실행될 상업적 계획이 없고, 장기 개발에 대한 합당한 전망이 있어야 한다. 라이선스 소지자는 엄격한 조건 하에 시장이나 기술 개발로 매장지의 탐사가 가능할 때까지 해당 지역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상업적 채굴이 아닌 경우 라이선스를 받은 지역에서 광물 자원을 회수할 권한이 있다. 라이선스는 최고 5년까지 유효하며 합동위원회(Joint Authority)의 재량으로 갱신이 가능하다. 유보 라이선스 신청비 A\$3,000는 신청서 접수 시 지불 가능하며, 라이선스 기간 동안 매년 구역 당 A\$200를 지불해야 한다. 갱신비는 A\$600이다.

(3) 채굴 라이선스

채굴 라이선스는 프로젝트의 상업적 채굴 단계에서 필요한 허가권으로 해당 지역에서 탐사 및 광물 회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범위는 21년 내에 최고 20구역(block)까지 가능하고 무제한 갱신이 가능하다. 라이선스 신청비 A\$3,000는 신청서 접수 시 지불 가능하며, 라이선스 기간 동안 매년 구역 당 A\$200를 지불해야 한다. 갱신비는 A\$600이다.

(4) 작업 라이선스

작업 라이선스는 라이선스 해당 지역 외에서 탐사, 유보, 또는 채굴 라이선스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허가권이다. 작업 라이선스는 최장 5년까지 발급이 되며 신청시 갱신이 가능하다. 신청비는

A\$3,000이며 라이선스 소지 기간 중 해당 지역에서 매년 A\$20(hectare 또는 그 이하의 면적당)를 지불해야 한다. 갱신비는 A\$600이다.

(5) 특수 목적용 허가권

특수 목적 허가권 소지자는 과학 조사, 사전 답사, 또는 적은 양의 광물 수집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사전 답사는 회사가 탐사라이선스 신청 여부를 결정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단기 조사이다. 소규모수집 활동에는 죽은 산호(dead coral) 채집이나 이와 유사한 제한된 활동이 포함된다. 이 허가권은 소지자에게 해당 지역에 대해 어떤 독점권도 주지 않으며 해당 지역에 라이선스를 발급 받을 때 우선권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타 라이선스와 다르다. 독점 재산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라이선스를 받은 지역의 경우 허가권 신청업체는 해당 지역의 라이선스 소지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허가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은 최장 12개월이며 신청비 A\$300는 신청 시 지불 가능하다.

Ⅲ. 석탄개발에 관한 규제체계

1. 개요

호주의 광산 채굴에 대한 개발사업 인가 및 허가는 각 주(6개 : NSW, VIC, QLD, WA, SA, TAS) 및 NT(Northern Territory : 북호주 행정자치구역)의 에너지 자원부에서 각각 관할하고 있으나 내용과 적용에 있어 거의 동일하다. 광물탐사를 원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대부분 해당 주의 에너지 자원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탐사 방법과 비용 등에 대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사전 인가(Licence)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동 기업이나 단체는 정부 기관지 혹은 지역일간지를 통해 광물 탐사 작업과 관련하여 공표(public notification)할 의무가 있다.⁴³⁾

43) 이하에서는 Laws and Regulation Handbook 참조

2. 채굴 승인 절차

- 초기 탐사
- 심화 탐사 및 평가(가능한 경우 유보 라이선스 소지 하에)
- 채 굴

3. 관련 라이선스

(1) 초기 탐사 라이선스

호주의 대부분 주 및 노던·테러토리아에서는 탐사 라이선스(퀸즈랜드에서는 허가권) 신청 시 탐사 방법 및 예상 경비를 상세히 설명하는 작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작업계획서는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해당 관할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허가권에 해당되는 특수 조건이 따라올 수 있다.⁴⁴⁾

호주 전 지역에서 라이선스 신청 시 정부 기관지 및 지역 신문에 공표해야 한다. 다만, 퀸즈랜드에서는 토지 소유권법 신속 심의 절차(Native title expedited procedures)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만 탐사 허가 신청을 공표하여야 한다.

뉴사우스웨일즈와 퀸즈랜드를 제외한 호주 전역에서는 탐사 라이선스 부여에 있어 대중의 의견(public comment)을 수렴하며, 서호주와 타즈마니아에서는 주총독관할 법정(Warden's Court)에서 관련 부서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는 공개 청문회가 열린다.

타즈마니아의 경우 탐사권 부여 거부자들은 해당 지역에 토지 및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 탐사 라이선스 발급 반대는 기술적 이유에서

44) 이하에서는 <http://www.industry.gov.au>, <http://www.dpi.nsw.gov.au/minerals>, <http://www.doir.wa.gov.au/mineralsandpetroleum>, <http://www.pir.sa.gov.au/sector5.shtml>, <http://www.minerals.nt.gov.au>, <http://www.nrme.qld.gov.au/index.html>, <http://www.dpi.vic.gov.au>, <http://www.mrt.tas.gov.au>, 및 “KOTRA, 자원개발진출 가이드 - 호주 (2008.8)” 참조

만 가능하며, 그 외의 반대 사유가 있을 경우 총독이 고려하여 결정. 당사자 간 해결이 되지 않는 분쟁은 광업분쟁재판소(Mining Tribunal)에 송부된다.

퀸즈랜드와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는 탐사 라이선스 발급에 대한 대중의 의견 수렴 조항은 없으나, 퀸즈랜드에서는 토지 소유주의 공표가 있어야 하며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탐사 라이선스 소지자가 탐사 시작 이전에 토지소유주와 토지 사용 합의(양자 조정 또는 총독의 결정에 따라)를 맺어야 한다.

(2) 유보 라이선스

호주 내 6개 사법 관할권에 모두 유보 라이선스 제도가 있음. 유보 라이선스는 인가를 받고 자원을 발견한 자가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할 때까지 개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빅토리아, 퀸즈랜드, 타즈마니아에서는 탐사 라이선스를 받은 후 바로 채광임대권을 받을 수 있으며, 빅토리아에서는 유보 라이선스가 존재하지 않지만, 타즈마니아에서는 임대권을 받은 후 유보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다.

(3) 채굴 임대권

대부분의 주 및 테리토리에서 채굴 임대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탐사 및 유보 라이선스 소지자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신청 시 탄광 개발 제안에 대한 개요 및 세부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타즈마니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채굴 임대권 신청을 정부 기관지 및 지역 신문에 공표해야 하며 임대권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업체는 대중, 토지 소유주, 임차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채굴 임대권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은 뉴사우스웨일즈와 서호주, 퀸즈랜드, 타즈마니아, 노던 테리토리에서는 임대권 부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청문회를 열 수 있다. 타즈마니아에서는 해당 지역에 토지 및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만 이의 제기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남호주에서는 토지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에게 이용 21일 전에 토지 점유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

보상의 경우는 유보 라이선스 보상 규정을 기준으로 이와 유사한 채굴 활동에 적용된다. 당사자들이 보상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주 총독 관할 법정(퀸즈랜드의 경우 토지 및 자원 분쟁 재판소)에서 보상액을 결정한다. 퀸즈랜드 및 타즈마니아에서는 보상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채굴 임대권을 받을 수 있다. 노던 광산에서 채굴을 하는 경우, 보상의 범위와 종류가 토지 소유주와 라이선스 소유자 간의 협상에 달려있지만 관례적으로(노던 테리토리, 남호주 제외) 광산업자가 광산이 위치한 토지를 구매한다.

채굴을 계획하는 경우 환경 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채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자세한 채굴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환경 및 광산 복구 규정에 부합하는 보증금 및 안전 조치가 준비되어야 한다. 남호주에서는 채굴 및 광산 복구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부 경우, 채굴 임대권을 받은 후에 환경 및 광산 복구 규정에 대한 조항이 추가될 수 있다.

채굴 임대 기간은 통상 25년(빅토리아 주는 20년, 퀸즈랜드 주는 총독이 결정, 타즈마니아 주 및 노던 테리토리는 해당 부서 장관이 결정)이며, 갱신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뉴사우스웨일즈는 갱신 기간 21년, 서호주는 임대 기간 21년에 갱신이 가능하다. 남호주는 임대 기간 최장 21년에 갱신이 가능하지만, 관행상 처음에는 7년만 주어진다.

광산업자는 매년 임대료를 지불(뉴사우스웨일즈 주 제외)하고 생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환경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던 테리토리에서는 가장 면적이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채굴 임대권

이 주어지며, 빅토리아 주에서는 260헥타르 이상의 토지에 대한 채굴 임대권은 해당 부서 장관의 동의가 필요함. 서호주와 남호주에는 채굴 임대권을 주는 토지의 크기에 제한이 없다.

채굴 임대권 신청업체는 토지 훼손, 토지의 분리, 통행권 제한, 토지 개량물 훼손, 피해 대책 비용과 관련 토지 소유주/임차인에게 보상을 해야 하며, 이는 광물 가치와는 무관하다. 서호주, 빅토리아, 남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는 토지 이용 박탈, 수입 손실, 사회적 혼란의 발생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한다. 뉴사우스웨일즈, 퀸즈랜드, 빅토리아, 타즈마니아, 노던 테러토리에서는 탐사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받는다. 당사자들 간에 보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총독 관할 법정(퀸즈랜드는 토지 및 자원 분쟁 재판소)에서 보상금을 결정한다.

채굴 임대권 신청업체는 환경 수용성을 기반으로 평가를 받으며, 탐사 라이선스를 발급 받은 후 환경 및 광산 복구 조항이 추가 적용될 수 있다. 퀸즈랜드에서는 광산 및 에너지부가 아닌 주 환경보호 단체에서 환경 평가를 수행한다.

탐사 기간은 통상 2~6년으로 주어지며, 갱신 기간은 임대 면적의 축소(토지 포기 면적)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 부서 장관이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조건을 적용시킬 수 있다. 빅토리아 주에서는 탐사 라이선스 소지자가 라이선스를 받은 후 2년, 4년이 되는 해에 임대 토지 포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4 장 호주의 에너지개발 관련 투자법제의 내용

제 1 절 호주에 대한 투자진출 형태

I. 투자 진출 형태

호주의 경우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연락 사무소를 제외한다면, 법인과 지점의 구분보다는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에 외국회사(foreign company)로 등록하는지 지역회사(local company)로 등록하는지의 여부 구분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하다. 이는 호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에서 행하는 투자승인 등의 단계에서는 현지 법인과 지점의 구분이 없다는 의미이며, 실제로 FIRB의 가이드에서는 “branch”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호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 Australia Pty. Ltd”와 같은 상호로 호주 법인을 설립하고 있다.

투자 진출 법인체의 성격상 자체적인 독립채산체제를 갖추지 않은 경우 지점으로 대외적 명칭을 정하기는 하지만, 호주에서의 책임과 의무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계좌개설, 은행거래 등에 있어 법인으로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국의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절차상 번거로움만 초래할 수도 있다.⁴⁵⁾

외국기업으로 등록하느냐 호주기업으로 등록하느냐에 따른 차이점은 외국기업의 경우 경영 공시의 의무가 없으며 대신 ASIC에 본사의 경영장부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기타 법인세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양자가 차이가 없으나 개념적으로 외국 기업의 경우 본사의 수익 중 호주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고 호주 기업의 경우 해외에서 올린 수익을 포함한 모든 수익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이중과세 협정이 없다고 가정할 때)는 차이는 있다.

45) 이하에서는 KOTRA, 자원개발진출 가이드 - 호주 (2008.8) 참조

그러나 이러한 세금 문제는 단순히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너무나 복잡한 문제이므로 호주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회계 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실 등을 통해 구체적 상담을 받아야 할 사항이다. 경영 공시 의무가 없다는 것은 일견 장점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은행과의 거래 등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에 대한 신뢰가 높은 호주 사회 전반적 풍토를 생각할 때 거래상 불이익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II. 진출 형태별 절차

1. 지 사 (지점)

법인의 설립절차와 동일하다.⁴⁶⁾

2. 법 인

(1) 허가대상 투자

법인이 투자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일단 허가대상 투자인지의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허가 대상 투자는 투자 신청서를 사업 계획서와 함께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FIRB)에 제출 후 투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① A\$ 5,000만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기존 호주 기업의 인수
- ② A\$ 5,000만 이상의 신규 투자
- ③ 외국 정부 또는 기관에 의한 직접 투자
- ④ 기존 호주 기업에 상당한 이해 관계를 가져올 주식 취득 또는 발행

제조, 서비스, 자원 가공, 석유 및 가스, 광물 (우라늄 제외), 비은행 금융 중개, 주식 중개, 관광, 부동산(도시권 제외), 농림수산 부문에서

46) 이하에서는 KOTRA, 자원개발진출 가이드 - 호주 (2008.8) 참조

의 A\$ 5,000만 이하의 외국인 투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 다음과 같은 투자의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를 FIRB 에 신고해야 한다.

- ① A\$ 5,000만 이상인 기존 호주 기업의 인수
- ② A\$ 5,000만 이상의 비주거용 상업용 부동산 취득 (농장은 A\$ 300만 이상)
- ③ A\$ 1,000만 이상이 소요되는 새로운 기업의 설립

(2) 법인 등록

호주에서의 회사설립(법인 등록)은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법인의 명칭을 정하고 나면 이의 보전을 위해 기업 등록소(Register of Companies) 또는 각 주의 Corporate Affairs Commission에 법인 명칭을 등록해야 한다. 명칭을 등록시킨 후에 다음 서류를 ASIC에 제출하면 법인으로 설립된다.

- ① 정 관 : 법인 명칭, 설립 목적, 사업 범위, 설립자 성명 및 주소, 주식 소유 관계, 주식 및 보증인의 책임 한계, 주식 자본금 규모, 주식 가격 등 법인의 사업 및 권한을 규정
- ② 부정관 : 이사의 임면 및 권한, 회의 개최 및 투표, 주식 양도 및 이익 배당금 처리 등 법인의 경영 및 통제를 규정
- ③ 법인 중역진 명단
- ④ 등록 사무실 공고

기업은 공개 또는 비공개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으며, 비공개 법인은 정관이나 부정관에 주식 이전권의 제한, 주주의 50 인 이내 제한 (고용인 주주 제외) 및 저당 설정 또는 주식 공매 금지 조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회사 형태에 관계없이 외국인이 호주에 회사를 설립하려고 할 때에는 투자 승인은 물론 현지 근무 예정자의 이민(비자) 문제까지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바, 가급적 현지 변호사 또는 회계 법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호주 내의 절차는 최소 영주권 소지자 이상이 진행하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는바 설립 단계에 있어서는 현지 파트너의 제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지인 1인과의 공동 대표 체제 등)

(3) 연락 사무소

투자심의위원회는 연락 사무소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한 ASIC에의 등록 등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상 특별한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비자의 발급, 사무실 임차 등에 있어 최소한 등록 사무소가 필요하고 이렇게 볼 때 법인 설립 절차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활동의 성격상 FIRB의 승인 필요 여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4) 공 장

신규 공장 건설 또는 기존 공장 건물을 인수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이해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Landlord)와 지방 정부(Council)이다. Council은 우리나라의 개념으로는 대도시의 경우 구, 지방의 경우 군 정도에 해당하며 이들 council은 공장지로 활용할 수 있는 “Industrial Area”를 설정해 두고 있다.

다만, Industrial Area에 대해 지방 정부가 소유권 등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소유권은 통상 수 개의 부동산 기업, 금융 기업, 개인 기업에 나눠져 있다.

공업용 토지라 하더라도 실제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등급으로 나눠지는데, 대표적인 것이 4A, 4B의 구분이다. 후자의 경우 시간대에 관계없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반면, 4A 지역은 주중에도 정해진 시간

에만 작업이 가능하며 주말에는 작업이 제한된다. 따라서 해당 공업 용지상에서 원하는 공장 운영이 가능한지의 검토와 최종 승인은 Council의 Planning Division을 통해 진행하며 이때 유능한 에이전트가 필요하다. 특히 Council에 따라 산업 시설 유치에 대한 태도가 매우 다른데, 불과 30Km 떨어진 council에 동일한 내용의 허가를 요청한 경우 한 곳은 5주가 소요된 반면 다른 곳은 5개월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일부 산업 시설 유치에 호의적인 지방 정부의 경우 특히 고용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매우 빠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통상 부동산 에이전트는 의뢰인으로 부터 적정 토지의 물색에서 시작해 소유주와의 가격 협상, 지방 정부와의 절차 진행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컨설팅 서비스의 비용은 시간당 A\$ 50~300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주에서는 일반 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에도 인근 주민들로부터 약한 달간 공시하고 의의를 접수한 다음,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개별적으로 해결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공장 건설 시에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시드니가 소재한 NSW 지역에서 입지 선정 시 호주 최대의 상업항인 보타니 항, 시드니 공항과의 연계, 시드니, 울릉공, 뉴캐슬 등 주요 도시와의 연결성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므로 NSW 지역의 도로망은 퀸즈랜드주나 빅토리아주에 비해 매우 낙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Ⅲ. 호주의 자원부문 투자환경 현황

자원 부문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모아지는 투자 분야인데 동 부문의 투자 안정성을 평가한 자료를 고려할 만하다.⁴⁷⁾

47) 이하에서는 <http://firb.gov.au/> 참조

BEHRE DOLBEAR & COMPANY, INC는 전세계의 주요 자원개발국가에 대하여 투자항목을 검토하여 분석자를 발표한다. 즉, 컨설팅 기업인 BEHRE DOLBEAR & COMPANY, INC는 광업 부문 투자의 종합적 안전도를 조사, 매년 부적격 투자국(“NOT TO INVEST” countries) 리스트를 발표하고 있다.

호주는 4년 연속으로(2005~2008) 가장 안전한 광업 투자 대상국으로 선정되었다. 호주는 종합 점수 60점으로 캐나다, 칠레를 제치고 4년 연속 가장 안전한 투자국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전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하여 어느 부분에 치우침이 없이 투자지로서 적격임을 보여주었다.

○ 조사 대상 국가

아르헨티나, 호주,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콩고, 가나, 그리스,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멕시코, 몽고, 나미비아, 파푸아 뉴기니, 페루, 러시아, 남아공, 탄자니아, 미국, 베네수엘라, 잠비아, 짐바브웨 등 29 개국

○ 조사 항목 (호주 점수)

- ECONOMIC SYSTEM : 경제적 자유도 (10)
- POLITICAL SYSTEM : 정치적 안정성 (9)
- SOCIAL ISSUES : 사회적 이슈 및 안정성 (8)
- PERMITTING DELAYS : 허가 등과 관련된 지연 (8)
- CORRUPTION : 부패도 (10)
- CURRENCY STABILITY : 통화 안정성 (8)
- TAX REGIME : 조세체계의 투명성 (7)

※국가별 자원부문 투자 위험도 조사

순 위	국 가	경제 시스템	정치 시스템	사회적 이슈	허가 관련 지연	부 패	통화 안정성	조세 체계	총 점
1	호 주	9	9	8	8	10	8	7	59
2	캐나다	10	9	6	5	10	9	7	56
3	칠 레	9	8	8	7	8	6	5	51
4	미 국	9	8	8	7	8	6	5	51
5	멕시코	7	8	5	8	6	6	8	48
6	브라질	6	7	6	5	4	6	6	40
7	그리스	8	8	2	2	5	9	5	39
8	아르헨티나	6	6	6	6	4	5	5	38
9	가 나	6	5	5	7	5	5	5	38
10	중 국	8	2	5	5	3	9	5	37
11	몽 고	6	5	5	6	3	6	5	36
12	나미비아	6	6	4	5	4	4	6	35
13	탄자니아	5	4	4	7	3	4	5	32
14	페 루	6	3	1	4	4	7	6	31
15	인 도	5	6	3	3	3	5	4	29
16	볼리비아	5	2	1	5	3	5	6	27
17	남아공	3	4	1	5	3	7	3	26
18	뉴기니	4	4	1	2	3	4	5	23

순 위	국 가	경제 시스템	정치 시스템	사회적 이슈	허가 관련 지연	부 패	통화 안정성	조세 체계	총 점
19	러시아	2	4	3	3	1	3	6	22
20	카자흐스탄	3	2	3	3	1	4	3	19
21	잠비아	3	2	2	5	2	2	3	19
22	인도네시아	3	5	1	3	1	1	4	18
23	베네수엘라	2	1	1	4	1	1	4	14
24	콩 고	1	2	1	3	1	1	4	13

제 2 절 에너지 광물자원 산업에 대한 투자 규제 내용

I. 에너지 자원 산업에 대한 투자규제의 기본 원칙

1. 외국 투자법 및 규제 (Foreign Investment Law and Regulation)

호주 연방정부의 장기적 정책에서는, 호주의 국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외국투자매수법(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에 의하여, 호주 국가 이익에 상충되는 M&A 계획에 대한 제안이나 요구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⁴⁸⁾ 동시에 연방정부는 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호주 경제에 바람직한 성과를 가져와 유익한 것으로 여기는 일반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수출 진흥형의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산업개발 및 고용기회 창출은 호주 국가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48) 이하에서는 <http://www.investaustralia.com.au/> 참조

고 할 것이다. 이러한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안전에 관한 허가에 대해서 연방 외국 투자 규제 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FIRB)가 심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를 재무부장관에 권고하고, 최종적으로 재무부장관이 결정을 하게 된다.⁴⁹⁾

2. 해외 기업의 등록 (Foreign Company Registration Requirements)

2001년 연방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에 근거하여, 외국 기업은 호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회사로서 등록해야 한다. 또한, 사업이란 호주에 있어 사채의 제공, 주식 또는 자산의 매매거래 또는 호주에 상설 사무소를 가지는 것을 포함한다. 외국 기업은 호주에서 투자를 하든가, 또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호주 국내에서 등록하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각 주의 광업청에서는 광물탐사 및 채굴권을 신청하는 기업에 대하여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주 광업법으로 규정하고 있던지 또는 각 주의 자원개발에 관한 기관이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있다.⁵⁰⁾

한편, WA주에서는 등록조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2001년 연방회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등록하려면 외국 기업은 호주 거주자 또는 호주 기업인을 현지 대리인으로 하여 을 최소 1명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호주 국내에 사무소를

49) 참고적으로 외국기업이 가지는 호주 기업의 자산을, 다른 해외 기업이 매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산가치가 5000만 호주 달러 또는 그 이상의 경우 외국투자규제위원회의 의견에 근거하여 재무부장관이 호주의 외국투자정책에 따라서 외국자본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이의가 없음을 표명하지 않는 이상, 매수를 진행시킬 수 없게 된다. 매수계획이 상세하게 심사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광업분야에서는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정책에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FIRB는 외국자본이 광업분야의 개발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서, 외국 기업에 의한 매수 계획에 대해서는 조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오고 있다.

50) 예를 들면, 1989년 광물자원법(QLD)에서는 「적격자」라는 개념에 대하여, 누구라도 광물탐사 및 채굴허가를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적격자」는 성인, 지방 자치체, 외국등록기업을 포함한 기업을 의미하고, 등록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가질 필요가 있다. 등록신청은 회사설립정관(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의 사본, 기업행동 헌장, 이사의 상세한 내용, 호주 거주자 이사의 권한, 호주 자산의 주식 명세 및 등록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상세를 첨부하여, 호주 증권투자 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 : ASIC)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호주에서 외국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대신에 호주에서 설립된 비상장 기업 또는 상장기업인 자회사를 통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자회사는 새로운 회사로서 설립하는지, Paper Company 등의 호주 기업을 취득하여 설립할 수 있다.

II.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의 종류

1. 탐사에 대한 투자 (Investment in Exploration)

탐사권 허가를 얻은 기업에 대하여는 인가에 관하여 부수하는 조건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광물자원 또는 석유자원의 탐사를 실시하는 경우, 호주 또는 호주기업을 포함할 필요는 없다. 또한, 새롭게 탐사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기존의 탐사권을 취득한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 투자 매수법에 따르는 심사가 면제되므로, 연방 외국투자규제 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FIRB)에 대한 보고나 허가신청의 필요는 없게 된다.

2. 광산개발에 대한 투자 (Investment in Development)

일반적으로 광업권리스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포함한 채굴권 광구의 매수 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매수법에 의하여 FIRB에 보고하여야 한다. 외국 기업이 관여한 광물자원 또는 석유의 탐사활동의 결과, 개발사업에의 전투자액이 1000만 호주 달러 이상이 되는 경우, FIRB가 심사를 수행하여 재무부장관이 그 결과를 보고한다.

Ⅲ. 투자회사의 유형 및 규제

호주에 있어서 일반 광업 및 석유 등의 에너지자원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이고 바람직한 사업 형태는 Unincorporated Joint Venture(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공동 사업)이다. 그 외의 형태로서는, 일반 파트너십, 유한 파트너십, 유닛트러스트, 유한책임회사가 있다.⁵¹⁾

1.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공동 사업 (Unincorporated Joint Venture)

Unincorporated Joint Venture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업 또는 수익의 분배가 공동참가로 행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호주 조세당국은 이러한 공동참가를 하고 있는 경우, 그 사업 형태를 호주 소득세법의 적용상 세무상의 파트너십이라고 볼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호주의 일반 광업 및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전형적인 「Unincorporated Joint Venture」에서 사업 참가자는 광물 탐사 및 채굴, 채광, 유정 또는 유전의 개발 및 생산비용을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분담한다. 또한, 사업 참가자 사이에서는 공동기업체에 있어서의 지분비율에 따르고 생산물을 인수하는 등의 계약을 맺고 있다. 공동기업체의 참가자는 각각에 분배된 생산물의 판매를 각자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동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요구되지 않고, 보통 이러한 계약체결을 회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각 참가자가 하나의 판매회사와 개별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거나 각 참가자가 각각의 생산물을 하나의 판매 회사에 매각하기도 한다. 이 판매회사는 공동기업체에 의한 생산물의 마케팅을 수행한다. 공동기업체의 각 참가자는 각각의

51) 이하에서는 <http://www.investaustralia.com.au/> 참조

지분에 대하여 공유(Tenant in Common)로서 각자의 권리를 보유하고 행사한다. 각 참가자는 자본에 의한 지출에 관하여 세법상의 여러 가지 특별 공제의 우대조치나 선택의 특전 등을 각각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Unincorporated Joint Venture』의 참가자에 대하여 공동기업체와 관련된 세무상의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참가자가 수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의 호주소득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처리된다. 공동기업체의 계약으로는 매니저 또는 오퍼레이터를 선임하고, 사업의 관리 및 사업 참가자로부터의 거출금(Cash Calls)의 징수 및 공동기업체 사업 운영에 필요로 하는 모든 지출을 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이다. 또한 많은 경우에 있어서, 공동운영에 관한 표준계약서가 이용되고 있다. 『Unincorporated Joint Venture』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공동참가인의 수익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공유로 취급할 것인가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Unincorporated Joint Venture』는 일반법상 파트너십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당국은 이에 대하여 사업형태가 세무상 파트너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파트너십 (Partnership)

파트너십은 광업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형태로서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즉, 파트너십 참가자는 연대 한편 단독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 각 파트너는 파트너십을 종결하지 않는 한 각자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는 점, 파트너십에서 내려진 결정에 관하여 모든 파트너가 구속된다는 점, 파트너십이 공동으로 취득한 전소득을 기본으로 각 파트너에게 과세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파트너십은 세법상 『파트너로서 사업을 실시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적 조직이며, 회사를 제외하다』고 정의되고 있어서 일반법에 따르는 정의인 『파트너십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

람들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서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규정과 비교하여 그 범위가 매우 넓다. 따라서 공동기업체는 일반법에 의하여는 파트너십에 해당하지 않아도, 세법의 규정에서는 파트너십으로서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호주의 일반 광업 및 에너지 산업에서는 세무상 파트너십이라고 보여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기업체 형태를 취하는 것이 보다 더 일반적이다.

3. 유한파트너십 (Limited Partnership)

유한책임에 의한 파트너십의 설립을 인정하는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 파트너십은 약간의 추가적 특징을 가지는 것 이외에는 보통의 파트너십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파트너십은 최저 한명의 무한책임 사원(General Partner)과 일정한 수의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s)으로 구성된다. 무한책임 사원은 파트너십의 채무와 의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파트너십 경영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유한책임사원이 부담하는 파트너십의 채무와 의무에 대한 책임은 각각 출자한 금전 또는 자산의 액수를 한도로 한다.

제 3 절 외국인 투자에 대한 최근의 변화

I. 개 요

호주 정부는 최근 2008년 2월 외국정부 소유 또는 지배하에 있는 기업의 대 호주 투자를 심사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는 최근 국부펀드의 확산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선진국 정부들의 국부펀드 규제 움직임 중 하나로 IMF와 OECD도 국제 공조를 통한 국부펀드 관련 국제법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II. 주요 내용

2008년에 호주 정부가 발표한 「외국정부 관련 투자에 대한 6가지 가이드라인(2008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⁵²⁾

(1) 투자자의 경영이 소속 국가의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

독립성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호주정부는 잠정 투자자가 소속 국가의 정부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으로 경영을 이끌어갈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잠정 투자자의 정관(지배구조 협약)이 외국정부에 의한 실질적·암묵적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자금조달 구조를 포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투자자가 부분 민영화되어 있는 경우, 호주정부는 비정부 지분의 규모와 구성(지배권에 대한 제한을 포함)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2) 투자자가 법률을 준수하고, 통상적인 상업 관행을 준수하는지 여부

호주정부는 투자자가 명확한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법률에 의한 적절하고 명확한 규제 및 감독에 귀속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호주정부는 외국인투자자의 지배구조 관행을 점검하며, 국부펀드의 경우 펀드의 투자정책 및 호주회사에 대해 어떠한 경로로 투자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는지를 검토하도록 한다.

(3) 투자가 해당 분야/산업의 독점을 유발하거나 공정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하여야 한다.

동 사항은 호주 경쟁정책에 따라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에 의해서도 검토될 수 있다.

52) 이하에서는 <http://firb.gov.au/> 및 KOTRA 자료 참조

- (4) 투자가 호주정부의 재정수입이나 기타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

예를 들어, 외국 정부기관에 의한 투자는 다른 여타 기관이 운영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되어야 하며, 기타 정책(예컨대, 환경 등)과 관련하여 호주정부의 방침에 부합되어야 한다.

- (5) 투자가 호주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호주정부는 특정 투자가 국가의 전략적/안보적 이익 수호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6) 투자가 호주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고, 호주 기업의 운영방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

호주정부는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호주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 등을 검토하며, 핵심 검토대상에는 수입, 수출, 역내 가공, R&D 및 노사관계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호주정부는 외국인투자 후 유지될 기업의 소유, 지배, 관리에 대한 호주인의 참여도(고용자, 채권자, 기타주주의 이익을 포함)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Ⅲ. 검 토

호주가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규제의 도입이라기보다 기존 규정의 구체적 적용에 대한 사항을 보다 명시적,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호주는 이미 「외국인 인수·합병법」(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사전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외국정부 소유의 지배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사전심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 ;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에 부여하였다.

그런데, 『외국정부 관련 투자에 관한 원칙』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외국정부 및 외국 정부기관의 투자 제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상기한 바와 같은 6가지 원칙을 고려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호주 재무부는 특정 외국인투자가 이 가이드라인에 불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호주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를 불허하거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 호주 투자를 원하는 외국 기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A\$5천만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기존 호주 사업체(석유 탐사 및 생산 업체 포함)의 지배적 지분 획득하기 위한 제안, 또는 A\$5천만(2006년 기준 미국 투자자들의 경우 A\$831백만) 수준의 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서

② 총 투자액 A\$1천만 이상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예: 석유 개발 프로젝트) 제안서

③ 5년 이상 토지를 획득 또는 임대,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기 위한 제안. 다만, 연방정부, 주정부, 테러토리 정부로부터 직접 획득한 토지나, A\$5천만 이하의 가치를 지녔고 이미 개발된 상업용 토지인 경우 승인을 받을 필요 없다.

한편으로, 2005년 1월 발효된 호주-미국 FTA로 인해 미국 투자자들에게는 공표와 관련하여 새로운 조건이 적용되고 있는데 미국 투자자들은 A\$831백만까지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A\$5천만 한도). 또한, 다른 관련 정책은 동등하게 적용된다. 호주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신규 또는 기존 석유 탐사에 소유권을 가진 외국기업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해외

정부, 정부기관, 정부 소유 혹은 산하 기업은 호주 내에 직접투자(탐사 포함)를 할 경우 그 규모에 관계없이(석유 및 가스 산업 포함)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결 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호주는 세계적인 자원대국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중요한 자원의외교 대상국가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호주와의 자원의외교 및 자원투자를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주요 자원수입국을 살펴보면 호주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호주에 있어서의 에너지 자원개발 법제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법제라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원개발법제 이외에 외국인 투자관련 법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호주의 투자법제는 호주의 국가정책이 외국의 자본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관대하고 개방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검토의 필요성은 충분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호주는 역사적으로 유형지로서 이용되던 지역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호주의 자원개발과 관련된 토지이용권에 대한 고찰을 필요로 하게 된다. 즉, 에너지광물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선주민의 토지에 관한 권리는 크게 선주권(Native Title)과 선주민 토지소유권(Indigenous Freehold Title)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호주 대륙을 유형지로 한 이주가 시작된 당시, 영국의 법률에 의하게 되면, 호주 선주민의 권리는 인정받지 못했다. 1901년에 독립국이 되고 나서도, 선주민은 선거권도 인정되지 않고, 전국 인구조사에도 포함되지 않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 되어, 1967년까지 완전한 시민권도 주어지지 않았다. 연방선거로 선주민의 선거권이 모든 주에서 인정된 것은, 1962년이 되고 나서이다. 이에 앞서 선주민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여러가지 법률이 제정되었고, 선주민 보호구역지정 등의 시책도 시행되었지만, 그러한 법률이나 시책은 최저한의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보호구역에 사는

선주민은 일반인의 눈으로부터 격리되어 비참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변화된 것은 얼마되지 않았던 1993년이 되어야 이루어졌다. 즉, 호주에서는 1992년의 Mabo판결에 의하여 선주민에게 전통적인 토지와의 관련성을 가짐으로써 선주민의 존재가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이것에 근거하여 1993년에 선주민법이 제정되었다. 선주민법에서의 선주민은 미이용의 정부소유지 및 방목리스지 내에 있는 토지나 수역 등에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작용의 농업 용지나 주택용지, 및 인프라 용지, 공공기관 용지 등에서 선주민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1996년의 획기적인 Wik판결에 있어서, 방목리스지에 선주민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선주민의 존재는 토지소유권의 존재와는 다르다. 선주민이 존재하는 것은 그 토지에서의 특정의 관습적 권리가 존재하고, 그 권리의 보유자에게 그 권리의 행사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선주민이란 토지 소유, 방목 리스 등의 다른 권리에서 분리되어진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호주 특유의 토지이용권리는 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투자에 있어서 제일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법령과 일반적인 광업법과의 적용 및 교차되는 검토를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호주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자원 개발의 첫 단계라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호주 연방정부의 장기적 정책에서는, 호주의 국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외국투자매수법(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에 의하여, 호주 국가 이익에 상충되는 M&A 계획에 대한 제안이나 요구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연방정부는 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호주 경제에 바람직한 성과를 가져와 유익한 것으로 여기는 일반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수출 진흥형의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산업개발 및 고용기회 창출은 호주 국가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

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안전에 관한 허가에 대해서 연방 외국 투자 규제 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FIRB)가 심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를 재무부장관에 권고하고, 최종적으로 재무부장관이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호주의 투자법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을 투자하여 해외자원개발에 진출하려는 국가에 있어서는 우호적인 법제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국가와 달리 외국자본에 대한 우호적인 경향을 가지는 호주에 있어서는,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대열에 우선적으로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경신, 호주동티모르해양에너지자원공동개발협정의 평가와 정책 시사점, 월간 해양수산 통권 제281호 (2008.2)

유승직, 호주의 에너지시장현황 및 잠재력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6.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호주의 자원개발 현황과 한국의 진출전략 (2007.8)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가정보 (2009)

_____, 자원개발진출 가이드 - 호주 (2008.8)

_____, 주요 선진국의 녹색에너지 기술동향 (2009.7)

_____, 주요국의 자원개발 규제현황 (2007.9)

Australia Energy Policy, Laws and Regulation Handbook (World Law Business Library), International business publications, USA, August 8, 2008

※ 참고 사이트

<http://www.fedcourt.gov.au/>

<http://www.climatechange.gov.au/>

<http://www.ga.gov.au/>

<http://www.dfat.gov.au/facts/>

<http://www.industry.gov.au>

참 고 문 헌

<http://www.dpi.nsw.gov.au/minerals>

<http://www.doir.wa.gov.au/mineralsandpetroleum>

<http://www.pir.sa.gov.au/sector5.shtml>,

<http://www.minerals.nt.gov.au>

<http://www.nrme.qld.gov.au/index.html>

<http://www.dpi.vic.gov.au>

<http://www.mrt.tas.gov.au>

<http://www.audit.wa.gov.au>

<http://www.nntt.gov.au/applications>

<http://firb.gov.au/>

<http://www.investaustralia.com.au/>

<http://www.environment.gov.au/>